

2025

2025 국학자료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의 선비들과
소장자료의
학술적 조명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의 선비들과 소장자료의 학술적 조명

2025 국학자료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2025. 9. 18.(목)
13:00 - 17:00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주최·주관



국학진흥원

전주이씨 참의공 | 병사공 종중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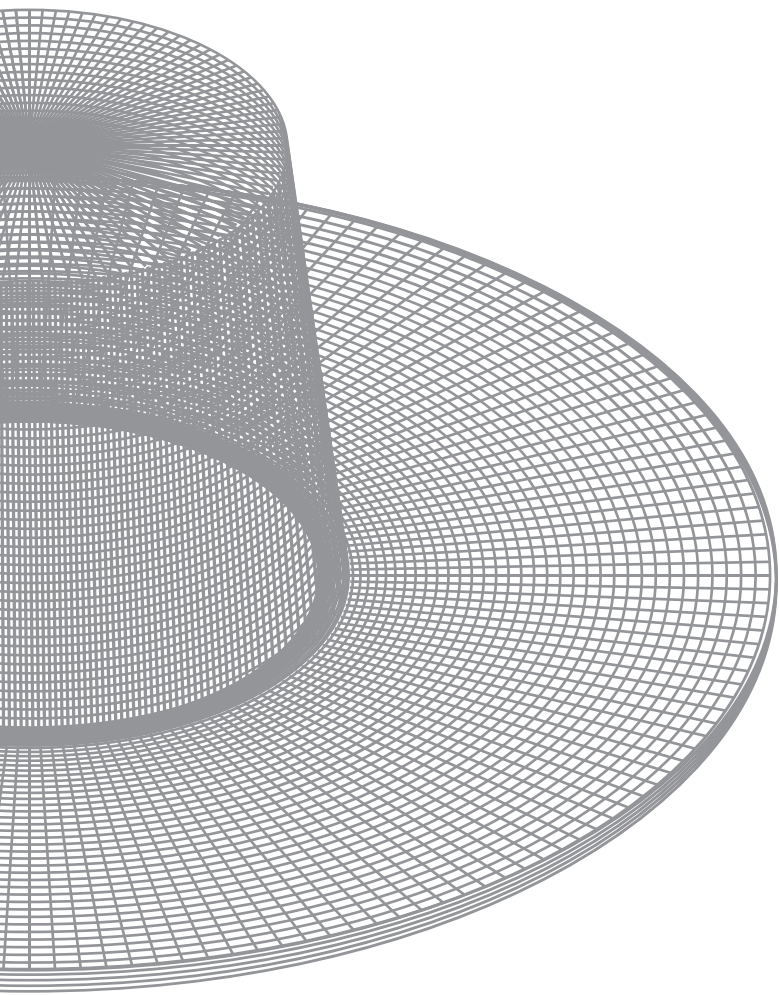


영광군



영광문화원





2025 국학자료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의 선비들과
소장자료의
학술적 조명

2025. 9. 18. (목)
13:00 - 17:00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

(57045)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3길 2-34

주최·주관  (재)한국학중앙연구원 HONAM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전주이씨 참의공 | 병사공 증중

후원  영광군 YEONGGWANG-GUN  영광문화원

CONTENTS

사회자 | 조일형
(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개 회(환영사 및 축사)

13:30~13:50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
이개호	국회의원	김성운	영광문화원장
장세일	영광군수	이정규	영광 전주이씨 참의공 종회장

기관 및 자료소개

13:50~14:10

안동교	기관 소개 및 병사공 종가 소장자료 기탁 현황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장

주제발표

14:10~16:20

김경숙	효령대군 후손의 영광지역 입향과 절도사 이란의 행적	1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장유승	병사공 종가 소장 미간행 필사본 연구	17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조광현	사춘헌(四春軒) 이중관(李重觀)의 생애와 관직 활동	37
	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이향배	『자경별곡(自警別曲)』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54
	충남대 한문학과 교수	

종합토론

16:30~17:00

좌장	김희태(前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발표자와 자유 토론	

효령대군 후손의 영광지역 입향과 절도사 이란의 행적

김경숙_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효령대군 후손의 영광지역 입향과 절도사 이란의 행적

金景淑(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1. 머리말
2. 효령대군 후손의 영광 입향과 단지동 정착 과정
3. 조선과 후금의 긴장 관계와 회답사 李灤의 활동
: 다원적 기억 형성과 전승
4. 맺음말

1. 머리말

전주이씨 효령대군 8세손인 兵使公 李灤의 종가는 현재 영광군 흥농읍 단덕리 단지마을에 위치한다. 이 집안이 영광에 입향한 것은 이란의 부친인 7세손 參判公 李奎賓(1549~1623) 대로 그는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후 이란의 장자인 判書公 李尙淵(1610~1671)에 이르러 흥농 단지동에 입향하여 현재까지 세거하고 있다.

영광 입향 초기 이 집안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란이다. 그는 정묘호란 직후 조선과 후금 사이 강화의 화약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후금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국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그의 아들 이상연은 그는 부친의 신원을 위해 국왕에게 상서를 올려 관작을 회복하였고, 이후 흥농읍 성산리 죽동에 부친의 묘를 조성하였다. 이 집안이 흥농읍 단지동에 입향한 것은 이란과 관련이 깊다.

본고에서는 전주이씨가 영광 입향 과정을 정리하고, 입향 초기 대표 인물인 이란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묘호란 직후 조선과 후금의 긴장 관계 속에서 그가 쟁점의 중심에 있었던 것에 비해 그의 행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이란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들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국가 기록뿐 아니라 家傳 기록, 사찬 역사서, 야사, 문집 등의 개인 기록들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이들 다양한 기록들을 종합하고, 국가의 공적인 기록, 그리고 사적인 기록으로서 家傳 기록과 사찬 역사서 및 문집 등의 개인 기록들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서사를 구성하여 전승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단일한 인물, 사건이라도 단일한 기억이 아닌, 서로 다른 관점, 배경, 정체성을 가진 여러 주체들이 각기 다르게 기억하고 전승하는 방식들이 공존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2. 효령대군 후손의 영광 입향과 단지동 정착 과정¹⁾

1) 이 장은 조일형,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의 역사와 기탁자료의 현황」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해제집 8-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 李灤』을 주로 참고하였다.

1) 李奎賓의 영광 입학과 월산리 정착 과정

영광 입학조인 李奎賓(1549~1623)은 효령대군 李甫의 6세손 李櫓의 아들로 숙부 參議公 李樸에게 입후되어 가계를 계승했다. 자는 應文, 호는 老松堂, 晚翠軒이며, 창녕현감을 역임했고,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부인 善山林氏와의 사이에 3남을 두었는데, 도정공 李滌(1572~1639), 李溧, 李灑이다.

그가 영광에 입학하게 된 것은 1613년 계축옥사가 계기가 되었다. 당시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시키면서 정국이 격동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이날이 맑아지지 않으면 이 문을 들어가지 않겠다.(此日不晴 不入此門)”고 하며 도성을 떠나 처가가 있는 영암군 구림마을로 낙남하였다. 장인 林渾은 선산임씨 林九齡의 아들이자 석천 林億齡의 조카로 해당 지역의 유력한 집안이었으며,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을 역임한 인물이다.

구림마을로 낙남한 이규빈은 다시 장인의 처가인 하음봉씨 奉世汀이 사는 영광 대마면 월산리로 다시 이거하였다. 봉세정도 백팽년의 처가 집안으로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영광에 낙남하여 은둔한 집안의 후손이었다. 중앙 정계의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도성을 떠나 은둔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이규빈과 처한 입장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의지하며 교류할 수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빈이 영광에 입학하여 월산리에 정착하게 되면서 부친 이박의 묘를 이장하여 현재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에 위치하며, 아래쪽에 재실 모선재가 있다.

2) 흥농 단지동으로의 이거 과정

이규빈이 월산리에 정착한 이후 손자 이상연(1610~1671)에 이르러 흥농 단지동으로 이거하게 된다. 부친 이란의 묘를 흥농 죽동에 조성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李灑(1582~1628)은 이규빈의 셋째아들로 태어났으며, 자는 子河, 호는 竹湖亭이다. 부인은 高靈申氏 申濯의 따님으로 그와의 사이에 李尙淵, 李尙望, 李尙聃, 李尙雲 등 4남을 두었다. 그는 1613년(광해군 5, 계축)에 32세의 나이로 대증광시 무과에 병과 21인으로 급제하였다. 방목에 따르면 급제 당시의 거주지는 서울로 기재되어 있다.²⁾ 급제 후에 그는 선전관, 비국랑, 오위도총부도사 등 무관 淸選職을 두루 역임하고, 외직으로는 함평현감, 전라우수사를 역임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어영중군으로 인조를 호위하여 강화도에 피난하였으며, 그 공로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에 발탁되었다.³⁾

정묘호란이 종전되고 강화 조약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1628년 1월 回答使/春信使로 심양에 사신을 갔다가 4월에 귀국하여 加資의 포상을 받았다. 그러나 胡差가 서울에 당도한 직후인 6월 23에 의금부에 하옥되어 국문을 받고 7월 7일 당고개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2) UC Berkeley East Asian Library 소장, 『癸丑增廣別試殿試榜目』(<http://people.aks.ac.kr/>). 최석정의 묘갈명에서는 ‘甲寅武科’라 하여 1614년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최석정, 『명곡집』 권24, 갈명, 절도사이공묘갈명

그후 10년이 지난 1639년 6월경에 아들 이상연이 上書하여 신원을 호소하여 복권되고 관작이 회복되었다.⁴⁾ 그는 부친의 묘를 흥농읍 성산리 죽동에 조성하고 흥농읍 단지동에 정착했다. 묘비는 이상연의 아들 李聖漢 형제가 최석정에게 청하여 비문을 짓고 남구만이 글씨를 써서 1710년에 세웠다. 1847년에 9세손 李龍純(1779~1849) 대에 재실 竹湖齋를 건립하였다.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파의 가계도>

1세 효령대군 李甫	...	5세全城君 蕝(1488~1543)	-	6세 楫
				栢
				楗
				櫟
				櫓
				樸(1515~1563) - 奎賓
7세 奎賓(1549~1623)	-	8세 滌(1572~1639)	-	9세 尙元, 尙弼, 尙根, 尙愼
		漂		
		灤(1582~1628)	-	9세 尙淵(1610~1671) - 10세 經漢(1628~1695)
				尙望, 尙聃, 尙雲
				維漢
				昌漢
				聖漢
				翊漢
				寅漢
				鼎漢
				女 鄭濟先, 申鐸, 徐文裕

3. 조선과 후금의 긴장 관계와 회답사 李灤의 활동: 다원적 기억 형성과 전승

1) 조선 정부의 공식 기억

1627년 정묘호란은 3월에 후금과 강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화약 조건들을 조정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불안정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후금은 조선에 명과의 단절을 포함하여 여러 요구를 해왔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슈가 무역이었다. 명이 후금과의 교역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후금은 조선의 식량 등 필요한 물자와 함께 중국 및 일본에서 생산되는 물자까지 확보하고, 이는 주변 세력을 아우르고 명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물적 자원이 되었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조선은 후금과의 무역에 소극적이어서 무역을 위한 개시를 약속한 후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었다. 그해 10월 후금은 胡差 仲男을 통해 “개시의 기한

4) 『인조실록』 인조 17년 6월 7일 기사

5)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103쪽

이 이미 박두했는데 아직 회답이 없다”고 하면서 “約和한 후에 조선이 그 말을 지키지 않으니 우호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며 조선을 압박하였다.⁶⁾ 개시 독촉은 11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⁷⁾ 12월에는 개시를 독촉하기 위해 龍骨大와 朴只乃 등 胡差 2명이 수행원 50명과 함께 파견되었다.⁸⁾

조선에서는 심양에 회답사를 파견하여 개시 문제와 포로 쇄환 문제에 대한 조선의 입장을 전했다. 12월 22일 회답사 朴蘭英⁹⁾이 치계한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이 답하기를 “하나는 의주에서 철군한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는 兩西가 텅비어 鎭江 개시가 모양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물화도 모두 상국에서 나오는데 상국이 일체 통화를 금하여 개시가 무익하다. 하나는 포로의 쇄환인데, 전쟁 후에 家計가 텅비어 힘이 미치지 못한다. 하나는 미곡을 발매하는 일인데, 전쟁 후에 경작한 곳이 하나도 없어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략> 양곡을 무역하는 일은 저들이 몹시 갈망합니다. 지금 호차가 온 것은 전적으로 이 일때문이니 후하게 접대해서 그 마음을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¹⁰⁾

이를 보면 정묘화약으로 후금이 철군한 것을 사례하지만, 개시 및 양곡 무역에 대한 문제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포로를 쇄환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 후에 家計가 텅비어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후금이 전쟁 때 사로잡은 포로를 값을 치루고 쇄환해 갈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포로의 가족들이 전쟁으로 값을 치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회답사 박난영은 후금에서 파견한 호차 용골대 등의 일행과 함께 귀국했다. 그 사이 해가 바뀌어 1월 3일 인조가 송정전에서 호차를 접견하고, 다음날 호차가 전달한 후금의 국서에 대한 조정의 회의가 열렸다. 개시는 봄 가을에 1개월씩 여는 것으로 박난영이 호차와 상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곡물 매매 3천 석 요구에 대비해 압록강 연변 고을의 비축 군량을 의주로 이동해 대비하도록 했다. 포로를 쇄환하는 일은 ‘지난해에 답한 바’에 의거하여 사리를 따져 잘 타이드도록 결정했다.¹¹⁾ 이와 함께 개시 때에 포로를 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즉, 박난영이 兩西에서 사로잡힌 600여명의 포로 명단을 적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를 양도 관찰사에게 보내서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고 개시에 맞추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¹²⁾

양국은 2월에 灣上 즉 中江開市¹³⁾를 열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회답사를 파견하였다.

6) 『인조실록』 인조 5년 10월 28일 신유

7) 『인조실록』 인조 5년 11월 9일 임신

8) 『인조실록』 인조 5년 12월 21일

9) 朴蘭英 : 인조대 회답관, 선위사, 춘추신사 등으로 활약했다. 특히 병자호란 때 청의 용골대 등과 휴전 교섭을 했다. 당시 조정에서는 綾峯君과 沈輯을 왕자와 대신으로 변장시켜 보냈는데, 청에게 탄로나 죽음으로 최후를 마쳤다. 이천 호법 遯義谷 선산에 禮葬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숙종대에 정려되고 고종대에 忠肅의 시호를 하사하였다.

10) 『인조실록』 인조 5년 12월 22일 을묘

11) 『인조실록』 인조 6년 1월 4일 병인

12) 『인조실록』 인조 6년 1월 6일 무진

13) 中江開市 : 평안도 義州 북단 압록강 일대에서 개설한 국제시장이다. 『대동여지도』를 보면, 의주에서 중국 九連城으로 건너가는 압록강의 黔同島와 蘭子島 두 섬 사이에 中江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기록상으로 이란이 회답사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이다. 『승정원일기』에 1월 11일 “회답사 박난영과 이란이 호차와 함께 西邊으로 내려갔다”는 기사가 실려있다.¹⁴⁾ 그에게는 중강에서의 개시 무역 문제를 교섭하여 진행하고 양곡 무역, 포로 쇠한 등의 문제를 교섭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40여 일이 지난 2월 28일 회답사 이란과 박난영이 의주에서 보낸 馳啟가 국왕에게 보고되었다.¹⁵⁾ 보고서는 미곡을 청에 발매하는 문제, 사신 왕래와 개시 교역의 定式, 被擄人 贖還 문제, 개시에서의 후금 인원 접대 문제 등을 담고 있었다. 미곡발매는 사신단에서 후금측의 龍骨大, 劉大海 등에게 쌀 1천 석으로 발매량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후금 쪽에서는 ‘두 나라가 서로 화친을 맺었으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두 따라야 하는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거부하였다. 사신 왕래는 조선측은 연 1회를 제안하였으나 후금은 가을과 겨울 2회를 요구하였다. 개시 교역은 조선측에서는 봄, 가을 2개월을 제시하였으나 칸은 봄, 여름, 가을의 끝 달로 3개월을 요구하였다.¹⁶⁾ 뿐만 아니라 후금은 개시 장소를 추가하여 함경도 회령에서도 개시를 열 것을 요구하였다.¹⁷⁾ 또한 후금측은 개시에 참여하는 후금 군병의 접대와 말 먹이 비용도 조선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¹⁸⁾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쟁론이 그치지 않았음을 이후 5월 17일 비변사의 言啓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⁹⁾

포로 속환은 조선측에서는 피로인 1,2백명을 쇠환하게 해주면 미곡 1천 석으로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후금측은 이미 장수들에게 포로를 나누어 주고 각자 매매하게 해서 다시 회수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임을 이유로 각자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가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피로인들이 사신단이 머무는 곳에 몰려와 울부짖으며 간청하자 이란을 포함한 사신들은 사적으로 가져간 말과 칸에게 받은 인삼을 팔아 각각 2명씩 사고, 일행의 員役들에게 각각 1명씩 사게 하여 모두 22명을 속환해 왔음을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개시하는 곳에 속환인들 4,5백 명이 찾아왔지만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이 많아 사오지 못해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하였다.²⁰⁾

의주에서 치계하고 바로 이어서 3월 3일에는 虜中에서 보낸 회답관 이란과 박난영의 치계가 조정에 도착했다. 개시와 관련하여 후금측과 교섭한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용골대와 所頭里 두 장수가 군마를 거느리고 중강 개시에 도착해보니 조선의 供饋도 없고 개시에 참여한 조선의 상인들과 물화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후금측은 “양국의 相好之意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며 화난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高聲作色]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사신단은 상고를 데리고 미리 와서 기다렸음을 설명하면서 후금쪽이 날짜를 어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4) 『승정원일기』 인조 6년 1월 11일 “回答使朴蘭英李灤 與胡差西下”

15) 『인조실록』 인조 6년 2월 28일 경신

16) 『인조실록』 인조 6년 2월 28일 경신

17) 『인조실록』 인조 6년 2월 22일 갑인

18) 『인조실록』 인조 6년 2월 28일 경신

19) 『승정원일기』 인조 6년 5월 17일, “又以備邊司言啓曰 當初灣上開市時 胡人則欲以四季朔爲之 我國則定以春秋爲之 胡人不爲聽從 及其開市之時 使李灤等 爭之不已” 후금측의 개시횟수 요구에 대해 이란의 치계에서는 봄, 여름, 가을 3회로 기록되는데 비해 비변사 언계에서는 4회로 표기되어 있다. 후금측의 요구 횟수가 변동된 때문으로 이해된다.

20) 『인조실록』 인조 6년 2월 28일 경신

다. 결국 양측은 다시 會坐하여 교역에 대한 일을 논의했는데, 후금쪽에서 불손한 말[不遜之語]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²¹⁾

이를 보면 후금측의 요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선측 사신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고성작색’, ‘불손지언’의 수모를 감당하며 교섭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음달에 회답사 이란과 박난영은 임무를 완료하고 조정에 복귀하자 국왕은 사신들이 진심으로 주선하여 개시 등의 사안을 결말지은 공로를 인정하여 논상하였다.²²⁾ 이에 따라 4월 19일 이란은 加資 즉 품계를 올려 받았다. 박난영은 가자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熟馬 1필을 하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²³⁾

이렇게 이란은 회답사로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공로로 가자의 논상까지 받았는데, 6월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그 시작은 5월 25일에 의주부윤 嚴愷이 보낸 胡書 2통이 조정에 전해지면서였다. 호서에서는 조선이 중국을 돕고, 모문룡과 접촉하고, 城池를 수축하고, 회령 개시를 허락하지 않고, 도망인을 쇠환하지 않는 등을 거론하고 있었다.²⁴⁾ 이는 조선과의 맹약을 깨려는 의도나 慫喝之意로 해석되었다.²⁵⁾ 당시 조선이 후금과 모문룡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다음날 국왕은 대신 및 장관들과 호서에 회답을 보내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주요 논제는 후금 측에서 누누이 제기했던 도망해 돌아온 사람을 쇠환하는 문제였다. 조선으로서는 도망하여 돌아온 자국민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차마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망인이 천여 명에 달하였기 때문에 값을 쳐서 보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선은 청의 의도가 “도망해 돌아오는 길을 막으려는 것”이며, “兵端을 야기시키기 위해 더욱 심하게 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전에 계속 빈말로 답해서 후금이 유감을 품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편의상의 조치로 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²⁶⁾

조정의 논의는 나뉘었다. 도망은 자들의 이름도 알 수 없고 찾아낼 수가 없다고 회답하며 대신 예물을 후하게 보내자는 의견과 이름을 거론한 5명은 값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국왕은 약간의 보상으로는 그들의 욕심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므로 예물을 넉넉하게 보내도록 하였다. 도승지 김상헌은 예물은 그들의 끝없는 욕심만 열어 주고 모욕을 당하고 책망만 심해질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사리에 의거하여 쟁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²⁷⁾

이처럼 후금이 和約 파기 및 兵端 야기의 공갈협박[恐嚇]을 하는 胡書로 인하여 조정이 초긴장 상태에 있던 5월 28일 사간원에서 이란의 징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간원이 아뢰기를, “<중략> 행 사과 이란은 오랑캐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국가가 위임하여 맡긴 뜻은 생각하지 않고 商賈처럼 직접 매매를 하였고 은 수백 냥으로 여자 1명을 사오기까지 했습니다. 저 적들이 포로가 된 우리 백성을 奇貨로 여겨 이것을 가지고 공갈하는 것은 이란이 단

21) 『인조실록』 인조 6년 3월 3일 갑자

22) 『승정원일기』 인조 6년 4월 8일; 4월 12일; 『인조실록』 인조 6년 4월 12일 계묘

23) 『승정원일기』 인조 6년 4월 19일

24) 『인조실록』 인조 6년 5월 25일 을유

25) 『인조실록』 인조 6년 5월 26일 병술

26) 『인조실록』 인조 6년 5월 26일 병술

27) 『인조실록』 인조 6년 5월 26일 병술

서를 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라를 욕되게 하고 혼단을 연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의 관작을 삭탈하소서.”²⁸⁾

사간원에서 거론한 것은, 이란이 사신으로 갔을 때 머무는 곳에 몰려와 울부짖는 사람들 중 약간명을 사서 데려 온 것을 말한다. 당시 사신단에서 포로 쇠환을 요구하자 후금 측에서 포로들을 이미 장수들에게 분급했으니 각 주인에게서 사서 데려가도록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사신단에서 비용을 급히 마련해 포로 22명을 사서 데려왔던 것이다. 이 사실은 이란이 의주에서 이미 치계하여 국왕에게 보고되었고, 당시에는 전혀 문제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胡書로 후금과 초긴장 상황에서 특히 도망인 쇠환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사간원이 이를 거론하고 나섰던 것이다. 사간원의 요구에 대해 국왕은 “이란을 추고하라”는 명을 내렸다. 추고의 이유는 포로를 직접 매매해서 데려와서 혼단을 연 죄를 징계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란은 후금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하는 데 조언을 하며 분주하게 날을 보내고 있었다. 추고의 명이 내리기 직전인 5월 27, 28일에도 사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胡人이 요구한 것으로 좋은 품질의 段子만 한 것이 없다. 錦繡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저들이 요구한 장검은 偃月刀 모양이다’, ‘저들이 요구한 것으로 大段, 潞州紬만 한 것이 없다’ 등등 후금이 선호하는 물종들을 제안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후금에 보낼 예물 준비를 하던 이란은 29일 갑자기 추고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사간원은 다음날에도 삭탈을 요구했으나 국왕은 “추고의 진술을 보고 처리하는 것도 늦지 않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6월 2일과 3일 계속된 사간원의 요구 끝에 6월 3일 파직하라는 왕명이 내렸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6월 23일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합동으로 이란의 拿鞫을 요구하여 이란은 결국 6월 24일 의금부에 拿囚되는 처지가 되었다.³⁰⁾

그 사이 胡差 朴仲男이 서울에 들어왔다.³¹⁾ 그런데 시점이 양사에서 합동으로 나국을 요구하기 직전인 6월 21일이라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호차가 서울에 도착한 직후에 양사에서 합동으로 나국을 요구하고 나섰음을 말해준다. 6월 4일에 파직된 것으로 일단락된 이란의 일이 다시 거론되고, 특히 양사에서 “이란의 죄상이 극히 통악하다”고 지목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신이 온 이후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음을 말해주며, 이는 결국 이란이 사신으로 갔을 때 칸에게 도망포로를 쇠환하겠다고 허락했다는 사안이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호차의 동태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호차가 서울에 들어온 이틀 후인 6월 23일에 열린 대처 회의에서 국왕이 “호차의 말이나 표정이 어떠하던가?”라고 묻는 데서도 드러난다. 김류는 “말이나 표정이 화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나온 주요 사안인 도망자를 쇠환하는 문제에 대하여 7~8명이라도 쇠환해 보낼 것을 청하였다. 그리

28) 『인조실록』 인조 6년 5월 29일 기축, “諫院啓曰 <중략> 行司果李灤 奉使虜庭 不念國家委寄之意 親執買賣 有同商賈 至以數百兩銀 買取一女而來 彼賊之以我民被擄者 爲奇貨 而執此恐喝者 未必非灤啓之也 其辱國啓釁之罪 不可不懲 請削奪官爵”

29) 『승정원일기』 인조 6년 5월 27일, 28일

30) 『승정원일기』 인조 6년 6월 2~5일, 23~24일

31) 『인조실록』 인조 6년 6월 21일 경술

나 국왕은 “의리로 말하면 온 나라가 병화를 입는다 하더라도 결단코 쇠환해 보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홍서봉, 정경세 등도 도망해 온 우리나라 사람을 차마 다시 호랑이 입에다 던져 넣을 수는 없다면서 국왕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동지의금부사 이경직은 국왕의 뜻은 지당하지만 형세가 부득이하다고 하며 김류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³²⁾

인조가 쇠환을 반대하면서 조정의 논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었다. 6월 26일 비변사는 포로 쇠환 문제에 대해 신하들의 의논이 혹은 옳다고 혹은 옳지 않다고 일치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날 이조판서 張維가 차자를 올려 민심이 떠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도망한 포로 쇠환을 극력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³³⁾ 비변사에서는 장유의 의견을 지지하며 중남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을 청하여 국왕의 윤허를 받았다.³⁴⁾ 다음날 이귀는 인조에게 面對를 청하여 장유의 주장은 원칙에 입각한 것이고, 자신은 임기응변이라면서 의주에 구류하고 있는 약간명을 쇠환해 보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조는 “장유의 말이 내 뜻과 꼭 맞는다. 지금 이 일 때문에 兵禍를 입는 다해도 결코 오랑개 말에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하며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³⁵⁾

이러한 상황에서 7월 5일 부제학 鄭經世의 차자는 도망포로 문제와 이란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었다. 그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인조를 지지하며 李灤을 지금 먼저 참수하여 중간에서 멋대로 허락하여 적을 속인 죄를 바로잡을 것을 주장하였다.³⁶⁾ 그리고 국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보낼 것을 제안하였다.

양국이 화친을 약속한 것은 본래 백성을 보전하기 위한 계책이다. 赤子를 포박해 보내는 것은 실로 차마 할 수 없어서 이전 문서에서 이미 누차 말하였다. 뜻밖에 일을 수행하는 신하가 자신이 먼저 허락하여 서로 속이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귀국에서도 몹시 미워하는 바여서 이미 薰街³⁷⁾에 머리를 매달았다.³⁸⁾

인조는 “경의 우국충정이 가상하다”면서 차자를 묘당에서 議處하게 하였다. 결국 이틀 후인 7월 7일 이란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인조실록』은 “回答使李灤伏誅”라고 일곱 글자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³⁹⁾ 『승정원일기』에서는 좀더 상세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경세 차자가 올라온 그날 의금부에서 이란의 元情을 보고하였고, 국왕은 이란을 사신단의 副使 박난영과 首譯 박경룡과 대질심문하여 回啓할 것을 명하였다.⁴⁰⁾ 다음날 7월 6일 의금부에서 대질심문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32) 『인조실록』 인조 6년 6월 23일 임자

33) 『인조실록』 인조 6년 6월 26일 을묘

34) 『인조실록』 인조 6년 6월 30일 기미

35) 『인조실록』 인조 6년 7월 1일 경신

36) 『인조실록』 인조 6년 7월 5일 갑자

37) 薰街: 중국 한나라 때 장안성의 남문 안의 사형장이 있던 거리 이름이다. 인근에 제후국의 사절이 머무는 蠻夷邸가 있었다.

38) 『인조실록』 인조 6년 7월 5일 갑자

39) 『인조실록』 인조 6년 7월 7일 병인

40) 『승정원일기』 인조 6년 7월 5일 갑자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란이 범한 죄는 박난영, 박경룡과 대질심문할 때 말한 바를 보니 ‘따르기 어려운 청’을 제멋대로 허락하여 ‘막대한 혼단’을 열었습니다. 나라를 욕보이고 일을 그르친 죄가 실로 죽음으로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회개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⁴¹⁾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란은 회개한 대로 시행하라고 판하셨습니다. 律官에게 照律한 후에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실로 일벌백계의 일이니, 효시하여 뒷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라”고 하였다.⁴²⁾

의금부에서 대질심문하여 내린 결론은 이란이 ‘따르기 어려운 청’ 즉 도망 포로의 쇄환을 조정과 상의없이 독단으로 허락하여 후금에게 빌미를 주었다는 것이다. 나라를 욕보이고 일을 그르친 죄는 죽음으로도 부족하다는 보고였다. 국왕의 판하를 받은 다음날 의금부는 律官에게 照律 즉 해당되는 형벌을 법조문에 따라 적용하여 처벌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왕은 일벌백계로 효시할 것을 직권으로 명하였다. 국왕의 명이 내린 바로 그날 7월 7일 의금부에서는 당고개에서 이란의 사형을 집행하였다.⁴³⁾

의금부에서 대질심문 결과를 회계한 7월 6일 쇄환 문제는 병조판서 李廷龜가 절충안을 제시했다. 의주에 居留하는 약간 명을 쇄환한 후 보상금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나온다면 저들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贖還하겠다고 한 본래의 뜻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⁴⁾ 그의 절충안을 놓고 조정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변사에서 “쇄환해 보내면 안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저 안된다고만 말할 뿐 이 상황을 타개할 방책은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쇄환에 찬성한 이들은 화란을 늦추고 백성을 보호하려는 계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왕이 입장을 바꾸어 쇄환을 결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에 인조는 “대신의 청에 勉副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쇄환을 결정하였다.⁴⁵⁾ 그리고 쇄환해 보내는 사람들을 속환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수정하여 仲男이 출발할 때 보내게 함으로써 일단락지었다.⁴⁶⁾

결국 이란을 사형시키고 약간명을 쇄환하고 속환을 청하는 조선의 제안을 후금 칸[汗]이 수용함으로써 양국의 위기는 일단락되었고 쇄환인은 다시 속환되었다. 회답사로 파견했던 죽산부사 鄭文翼과 朴蘭英이 돌아와 인견하는 자리에서 인조는 이란의 죽음에 대한 후금의 반응을 하문하였다. “오랑캐가 이란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여기는가?[虜以李灤之死爲何如]” 정문익은 “용골대 등이 이란의 죽음을 듣고 서로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기뻐하는 뜻이 있는 듯하였습니다.[龍胡等聞灤之死 相顧而笑 似有快之之意]”라고 답하였다. 또한 그는 후금이 호의를 많이 보였다고 하면서 맹약대로만 하면 몇 해 동안은 출병할 형세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⁴⁷⁾ 정문익은 왕명을 잘 완수하고 돌아온 공로를 인정하여 다음날 특명으로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되었다.⁴⁸⁾

41) 『승정원일기』 인조 6년 7월 6일 을축

42) 『승정원일기』 인조 6년 7월 7일 병인

43) 『승정원일기』 인조 6년 7월 7일 병인, “禁府 李灤堂古介行刑 啓”

44) 『인조실록』 인조 6년 7월 6일 을축

45) 『인조실록』 인조 6년 7월 7일 병인

46) 『인조실록』 인조 6년 7월 9일 무진

47) 『인조실록』 인조 6년 10월 15일 임인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639년 6월 이란은 조정의 논의에 다시 등장하였다. 그의 아들 李尙淵⁴⁹⁾이 왕에게 上書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때 영의정 최명길과 좌의정 신경진은 “이란이 죽을 때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서 의금부 推案을 검토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죄목은 대질심문으로 모두 밝혀졌고, 단지 도망 포로를 쇄환하는 문제에 대해 ‘조정에 돌아가 고하여 잡아보내겠다고 가볍게 답한 것[輕以歸告朝廷 捉送爲答]’이 죽게 된 이유로 분석하였다. 그의 실수는 龍將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경솔하게 대답한 것이지 고의로 국가에 일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죽음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인조는 “이미 죽은 사람을 지금 깊이 탓할 것이 없으니, 복직시키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면서 직첩을 追給할 것을 명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볼 때, 이란의 사형과 소수 인원의 쇄환 조치는 양국 간 명분과 실리의 균형을 맞추는 절충점으로 작용하고 정묘호란의 화약 조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10여 년 후에 대신들이 그의 죄가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형 결정을 내린 국왕이 직접 복권시킨 것은 그의 죽음이 양국의 긴장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2) 家傳 기록과 이란 서사의 재구성

국가의 공식 기록이 후금과의 긴장 관계와 국가적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家傳 기록은 이란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하였다. 서사의 출발은 1639년 아들 이상연의 上書로 부친의 복권을 실현시킨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 상서를 올렸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 내용은 확인할 길이 없다.

다음은 1710년대 작성된 최석정의 묘갈명의 서사이다. 이란의 분묘는 흥농읍 성산리 죽동에 조성되었고, 1710년에 최석정의 묘갈명과 남구만의 글씨를 받아 묘비를 세웠다.⁵⁰⁾ 묘갈명에서 최석정은 이상연의 아들 李聖漢 형제가 “우리 할아버지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 말을 아끼지 말고 빛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여 묘갈명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묘갈명에서 이란의 행적은 국가의 공식 기록과 큰 줄기는 상통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사건의 발단인 도망포로 쇄환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의 입장에서 서사를 재구성하였다. 국가 기록에서는 이란이 따르기 어려운 청을 멋대로 허락하여 나라를 욕보이고 일을 그르쳤다는 입장이었으나, 묘갈명에서는 다른 기조를 보인다.

무진년(1628) 1월에 春信使로 심양에 갔다. 박난영이 부사였다. <중략> 우리나라 피로인들이 도망친 자들이 계속 이어지자 용골대[龍胡]가 사신에게 치계하여 쇄환해 보내게 했다. 공이 박난

48) 『인조실록』 인조 6년 10월 16일 계묘

49) 李尙淵 : 『인조실록』에는 李尙尹으로 표기되어 있다.

50) 묘갈명에서는 이성한의 이력을 충주목사로 기록하였는데, 그는 1708년 2월 6일에 충주목사에 제수되었다가 1710년 7월 6일 이유민(李裕民)으로 교체될 때까지 2년 반 정도를 역임하였고, 그후 1711년 5월 12일에 남원부사로 임명되었다.

영과 이를 따르지 않고, 즉시 金의 국서를 가지고 연명하여 계문했다. 이윽고 조정이 쇠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용골대가 크게 威囑을 더하니 공이 답하기를, “피로인이 도망해 돌아왔는지 사실 여부를 국가는 살펴 알 수 없다. 설령 도망해 돌아온 자가 있어도 양국의 금지조항이 지엄하니 그들은 행적을 숨기니 어떻게 조사해 찾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돌아가 조정에 아뢰어 국서를 올려 마땅히 回報가 있을 것이다. 어찌 이렇게 재촉하는가? 너는 마땅히 이 상황을 爾主[汗]에게 알려라” 하였다.⁵¹⁾

이란이 용골대의 공갈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조정에 돌아가 회신하겠다고 대응하였고, 이는 사신으로서 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석정은 이란이 돌아가 조정에 아뢰겠다고 답한 것에 대하여, 당시 조정의 의논이 매우 준엄하여 이란이 준엄한 말로 강하게 막지 않은 것을 쇠환을 허락한 것에 가깝다고 여겼다고 해석하였다. 조정의 의논이 과중하게 적용되었다는 평가였다.

또한 국가의 공식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首譯 박경룡과의 불편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공은 그릇이 엄중하여 일행을 단속하여 불법한 일이 있으면 조금도 관대하지 않았다. 일행이 모두 삼가 조심하였다[憚攝]. 수역 박경룡은 본래 奸濫하여 오랑캐 장수와 결탁하여 호기를 부리고 악행을 하였다. 공이 누차 질책하여 박경룡이 속으로 싫어했다. <중략> 돌아온 후 박경룡이 유언비어를 부채질하여, 공이 자신이 함부로 쇠환해 보내겠다고 경솔하게 허락했다고 하고, 그 밖의 없는 일을 여러 가지로 얹어냈다. <중략> 판금오 李曙가 간사한 역관의 무소를 치우치게 들어서 마침내 보고문이 그 옥에 이르렀고 극형으로 논하였다.

사신단의 역관 박경룡이 이란의 기강 단속에 불만을 품고 불편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가 귀국 후에 이란을 무고하고 경솔하게 허락했다고 진술하여 극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경룡과의 불화는 국가 기록인 실록에서도 그 흔적이 보인다. 1628년 2월 28일에 회답사 이란과 박난영이 의주에서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權仁祿과 박경룡은 돌아가지 않을 뜻을 가지고 있기에 신들이 수일 동안 강력히 쟁변하여 가까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라는 구절이 보인다.⁵²⁾ 박경룡은 심양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했는데 사신들이 며칠을 설득하여 겨우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박경룡이 불만을 품었으리라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은 억울한 이란의 원한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각되고 있다. 심양을 왕래한 청음 김상헌, 懶軒 朴潢 등의 재상들이 이란의 심양에서 행한 진실과 억울함을 알게 되어 탄식하였다. 이렇게 이란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1639년에 이란의 아들 이상연이 上章하여 호소했을 때 조정의 논의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지천 최명길은 당시의 推案을 검토한 결과 당초의 죄명은 낭자하였으나 심문 과정에서 실상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어 그가 심하게 무고당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솔하게 妄對한

51) 최석정, 『明谷集』 권24, 碣銘, 節度使李公墓碣銘(<https://www.itkc.or.kr/>)

52) 『인조실록』 인조 6년 2월 28일 경신

것에 대해서는 죄가 죽음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좌의정, 우의정도 영의정과 같은 의견이었다. 그리고 인조는 이를 근거로 復爵을 특별히 허락하였다.⁵³⁾

복권 이후 이란 후손의 행적까지 연결지어 世嫌으로 서사를 완성하고 있다. 1703년(숙종 29, 계미)에 이란의 손자 李聖漢이 청주목사에 제수되었는데, 마침 충청도관찰사 李德成이 이경직의 손자였다. 이경직은 동지의금부사로 이란과 박난영, 박경룡을 대질심문할 때 참여했던 인물이다.⁵⁴⁾ 이란의 후손 입장에서는 세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이 때문에 이성환은 병을 칭하고⁵⁵⁾ 사직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조판서 李濡가 이성환의 치적과 세함의 곡절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국왕이 開釋을 하교하였다.⁵⁶⁾ 『승정원일기』에도 해당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숙종이 담당하여 죄를 청한 것이 아니라 의금부당상으로 隨參한 것 뿐이라고 하교하여 청주목사에 還任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였다.⁵⁷⁾

이상과 같이 가전 기록에서는 이란을 중심 축으로 구성된 서사가 등장하였고, 이는 국가 기록의 구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란은 사신으로서 대처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 박경룡과의 불화에 따른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 억울한 그의 죽음은 조정의 대신들의 도움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국왕의 결단으로 복권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란의 죽음의 원인을 역관과의 불화와 원한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함으로써 국가 정책과 최고결정권자인 국왕에게 책임을 부가하지 않으면서 그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결국 국왕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극적 서사를 구성한 것이었다.

3) 개인 기록과 이란의 행적 전승

개인 기록들에서는 국가 기록과 가전 기록이 어떻게 반영되어 전승되고 있을까? 이란의 행적은 『대동야승』, 이공익(1736~1806)의 『연려실기술』 및 李長淵(1713~)의 『조야집요』 등 사찬 역사서 또는 야사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들은 다른 사찬역사서나 기록들에서 傳寫, 抄錄의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재생산되고 전승되었기 때문에 이란의 행적에 대한 기록의 재생산 및 전승을 살피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대동야승』은 숙종말~영정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사집이다. 「續雜錄」에 1628년 2월 이란을 회답사로 오랑캐에게 보낸 기사부터 시작하여 무진년의 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국가 기록을 전승하여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도망인 쇄환 문제에 대한 조정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국가 기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란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6월에 박경룡과 胡差 仲男이 서울에 당도했는데, 중남이 “전일에 이란이 본국으로 들어갈 적에 도망인을 잡아 보내겠다고 칸 앞에서 이미 승낙하고 돌아간 지 이미 오래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이란은 이 일을 조정에 말하지도 않았고, 또 이란이 사가지고 온 여인은 바로 韓潤의 여자이다. 그

53) 최석정, 『明谷集』 권24, 碣銘, 節度使李公墓碣銘

54) 『승정원일기』 인조 6년 7월 5일, “禁府 李灋元情入啓 傳曰 今日開坐 趁午前與朴蘭英朴景龍 面質回啓 而此等曲折 似是朴景龍言于李景稷 必李景稷進參坐起然後 景龍不得前後異辭矣”

55)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2월 15일 을유

56) 최석정, 『明谷集』 권24, 碣銘, 節度使李公墓碣銘

57)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2월 23일 계사

밖에 잘못된 처사가 한돌이 아니다”고 하여, 이란을 국문하였다는 기사이다.⁵⁸⁾ 국가 기록과 가전 기록에서는 명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란이 의금부에 잡혀가 국문을 받는 직접적인 계기가 호차 중남의 발언에서 발단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란에 대해서 국왕이 “오랑개가 돌아간 뒤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라고 하였으나, 조정의 의견은 “오랑개들이 보는 자리에서 죄를 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양국의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란의 희생을 감안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에서는 인조대 「丁卯虜亂」을 서술하는 중간에 이란을 국문한 이유, 의금부의 국문 결과 보고, 형 집행으로 구성된 총 55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란이 왕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과 사신으로 가서 행동이 적절치 못하여 저들에게 수모를 당한 것, 唐女[韓潤女]를 사사로이 사온 죄를 국문하였고, 의금부에서 ‘따르기 어려운 청을 허락해 막대한 혼단을 열어 나라를 욕되게하고 일을 그르친’ 죄목으로 보고하여 형을 집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⁹⁾ 이러한 『연려실기술』의 구성은 정묘호란과 수습과정 속에서 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자의 평가나 논평은 배제되고 서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李長淵(1713~)의 『朝野輯要』는 1784년(정조8) 무렵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본말체 역사서이다. 이 책에서는 이란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묘년 강화한 이후로 사신들이 왕래하였다. 무진년에 이란, 박난영을 회답사로 胡中에 보냈다. 겨울에 박난영 등이 胡差 용골대와 함께 胡商 및 호위병 1천여명을 데리고 鎭江에 와서 압록강을 건너 시장을 열었다. <중략> 그때 信男이 우리나라에 머물렀는데, “이란이 도망인을 쇠환하는 일을 칸의 면전에서 허락하고, 韓潤이 데리고 있는 여자를 사왔다”고 하였다. 조정에서 이란이 나라를 기망하고 왕명을 욕되게 한 것을 알고 국문하여 사형시켰다.⁶⁰⁾

이란이 의금부에 잡혀가게 된 직접적 계기에 대해 『대동야승』에서는 호차 仲男을 제시했는데, 『조아집요』에서는 信男이 등장하고 있다. 이름은 차이가 있지만 이란이 칸의 면전에서 도망인 쇠환을 허락하고, 韓女를 사온 것을 문제삼은 것은 일치한다. 그리고 심문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국문하여 사형시켰다는 결말을 쓰고 있다. 『연려실기술』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중간 과정에 대한 이해보다는 사건의 발생 배경과 결말만 설명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이 밖에 개인 기록에는 개인 문집들이 있다. 최석성의 『명곡집』에는 가전 기록의 서사를 형성한 묘갈명이 수록되어 있다. 정경세의 『우복선생문집』에는 그의 무진년 차자가 수록되어 있고, 李垞의 『창석선생문집』에는 무진년에 올린 疏劄가 실려있고, 許禧의 『수색집』에는

58) 『대동야승』 續雜錄 2, 무진년 상, 6월

59) 이공익, 『연려실기술』 권25, 인조조 고사본말, 정묘년의 虜亂, “拿李灤鞫問 奉命無狀 使彼時行事鄙悖 取侮彼人 又私買唐女之罪 禁府啓曰 灤之罪犯 擅許難從之請 以開莫大之釁 辱國債事 即日行刑”

60) 이장언, 『조아집요』(규7472), 自丁亥講和之後 信使往來 戊辰以李灤朴蘭英爲回答使 送胡中 冬蘭英等與胡差龍骨大 率胡商及護兵千餘人來鎭江 渡鴨綠江開市 <중략> 時信男來留我國 言李灤以逃人刷還事面諾於汗 且灤買來韓潤率女云 朝廷知灤欺國辱命 鞫誅之

「走回人刷還議」가 실려있다. 서로 다른 기억을 담고 있는 문집들은 학문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유통의 범위가 다르지만 지식인층 사이에 유통되었을 것이다. 특히 최석정의 묘갈명과 정경세의 차자는 가전 기록과 국가 기록을 대표하는 정반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어 기록의 주체와 목적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서 기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상을 통해 정묘호란을 마무리하기 위한 양국의 교섭 과정에서 이란의 행적은 사찬 역사서, 야사집, 문집 등 다양한 개인 기록 속에 재구성되며 조선후기 사회에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야사집에서는 1628년 조선과 후금 사이의 도망인 쇄환, 개시 문제 등 긴장 국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란 사건이 언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가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포함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생략한 채, 발생 배경과 결말만을 간략히 기술하기도 했다. 개인 문집들에는 가전 기록뿐 아니라 1628년(무진)에 조정에서 활동한 인물들의 疏劄가 수록되어, 문집의 유통과 함께 지식인층 사이에 서로 다른 기억의 층위들이 복합적으로 공유되었다. 이러한 개인 기록들은 대체로 국가 기록의 서사 구조를 차용하여 조선과 후금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전승하고 있었다. 가전 기록이 박경룡과의 관계, 복권 과정, 세협 등 이란을 중심축으로 구성된 것과는 기억 방식이나 서사 구조에서 확연히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3.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령대군 후손 이란의 행적은 개인의 비극적 운명을 넘어, 조선과 후금 사이의 외교적 긴장과 국가의 대응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기억과 기록의 방식이 교차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은 정묘호란 이후 회답사로 파견되어 개시 무역, 도망인 쇄환 등 민감한 외교 현안을 조율했으며, 후금의 압박 속에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정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놓이며 극형을 면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후금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희생이었다는 점에서, 한 인물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권력 구조, 외교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이란의 행적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국가의 공식 기록에서 양국간 외교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처벌의 사례로 재현되었지만, 가전 기록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쓴 충직한 사신의 이야기로, 그리고 사찬 역사서와 문집 등 개인 기록들에서는 국가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세밀한 부분들까지 드러내었고, 한편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결과만 간략히 언급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었다. 특히 가전 기록은 박경룡과의 갈등, 국왕의 결단, 복권 과정 등 이란 개인의 삶과 명예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서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기록이 보여주는 공식적인 서사와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과 인물을 둘러싼 기억은 단일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고, 각기 다른 기록 주체의 입장과 목적에 따라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전승되고 있었다. 결국 이란의 사례는 조선후기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 즉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그 안에서 개인의 행적이 어떠한 의미로 재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이란의 행적을 둘러싼 다양한 기록의 전승 양상은 조선후기 지식 사회에서 기억이 형성되고 유통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당대의 권력 구조와 어떻게 연동되어 있었는지를 밝히는 유의미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병사공 종가 소장 미간행 필사본 연구

장유승_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병사공 종가 소장 미간행 필사본 연구

장유승(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1. 머리말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 자료는 고서 373점, 고문서 149점, 유물 2점, 서예 2점으로 총 526점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서를 분류하면 經部 29책, 史部 73책, 子部 55책, 集部 216책으로 집부의 수량이 압도적인데, 이는 어느 가문이나 비슷하다. 집부 도서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후손이 소중히 보관하는 선조의 傳記, 詩稿, 書簡, 文集 등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서 373점을 간행 형태로 구분하면 활자본이 90점, 목판본이 100점, 필사본이 174점으로 필사본이 46%를 차지한다. 이처럼 소장 도서의 절반 가량을 필사본이 차지하는 현상 역시 어느 가문에서나 비슷하다. 활자본은 소량 다품종 생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간행 부수가 많지 않고, 보급을 목적으로 간행하는 목판본은 활자본에 비하면 흔한 편이지만 당시로서는 그것도 구하기 쉽지 않았다. 활자와 목판 인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책의 제작은 기본적으로 필사에 의존하는 것이 당시 현실이었다.

필사본 고서의 상당수는 앞서 언급한 선조 관련 기록이다. 선조의 행적, 그리고 선조가 남긴 시문을 정리하는 것은 자손의 의무였다. 활자본과 목판본은 複數를 제작하므로 여딘가 다른 곳에 동일본이 있기 마련이다. 반면 필사본은 아무리 똑같이 베껴쓴다 해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필사본은 유일본이다. 여기에 필사본의 가치가 있다. 특히 간행되지 않고 원고 상태로 남아 있는 문집은 더욱 가치가 크다. 문집은 개인이 평생에 걸쳐 지은 시문을 모은 책으로, 개인의 삶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그가 거주했던 지역 사회의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병사공 종가 소장 필사본 자료 중에는 다수의 문집이 있다. 李任漢(1632~1715) 이하 李衡齡(1657~1736), 李重觀(1674~1733), 李重英(1687~1740), 李龍純(1779~1849) 등의 문집이다. 비교적 잘 정리된 상태이므로 문집 간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 문집들을 소개하고 그 제작 경위를 규명하며, 그중 가장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용순의 문집 『穆如淸風』에 수록된 시를 통해 19세기 영광 지역 향촌사족의 일상을 살피고자 한다.

2. 필사본 문집 현황

현전하는 병사공 종가 필사본 자료는 『義將公行狀草』, 『市隱集』, 『市拙齋集』, 『炭翁集』, 『四春軒集』, 『四春軒公行蹟』, 『晉陽詳定』, 『養拙堂』, 『獨見』, 『諸家詩抄』, 『穆如淸風』, 『蠹

石樓題詠』, 『語夏』, 『丹山稿』, 『丹山集』, 『丹山詩稿』, 『丹山吟稿』, 『丹湖雜詠』 등이다. 이중 『의장공행장초』와 『사춘헌공행적』은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글이고, 『시졸재집』은 科文 모음집이다. 『진양상정』은 책 형태로 되어 있지만 成冊 古文書에 해당한다. 『독견』, 『촉석루제영』, 『단호잡영』은 특정 시기의 시를 엮은 詩稿이며 『제가시초』는 詩選集이다. 『단산시고』와 『단산소고』 역시 문집 형식으로 정리되지 않은 원고 상태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문집은 『시은집』, 『탄옹집』, 『양졸당』, 『사춘헌집』, 『목여청풍』, 『단산집』 6종에 불과하다.

이중 『시은집』, 『탄옹집』, 『사춘헌집』, 『목여청풍』 4종은 판심에 ‘芝士集’이라 판각한 동일한 형태의 界線紙에 필사되어 있고, 『양졸당집』과 『단산집』은 계선 없는 공책에 필사되어 있다. ‘芝士’는 이용순의 호이므로, 판심에 ‘지사집’이라 판각한 용지는 본디 이용순이 자신의 원고를 정리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선조들의 시문을 필사하는 데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판심에 自號를 판각한 용지는 조선후기 京華世族이 즐겨 사용하던 것이다.

계선지에 필사된 4종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丹溪’, ‘芝士’, ‘完山李龍純景輝之印’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모두 이용순의 인장이다. 따라서 4종의 문집을 정리한 인물은 이용순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점은 『시은집』 권두에 실려 있는 이용순의 서문(183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조의 유고는 상자에 흩어져 있는데 벌레 먹은 책도 있고 쥐가 물어뜯은 곳도 있다. 연대로 말하자면 오랜 세월을 거치고 또 불에 탔다. 9세조 이하가 차례로 계승하여 제영시가 많아 저절로 家業을 이루고 아름다운 시가 제법 많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낱장 문서에서 뽑은 것이며, 책으로 엮은 것은 詩卷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어찌 남의 눈에 보여주겠는가. 그저 부서진 상자에 보관하거나 묶어서 다락에 놓아둘 뿐이니, 후손된 자가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아, 나는 일찍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詩에 몰두하여 대략을 조금 알았다. 선조의 유고를 가져다보니 잘못 쓰고 빠진 글자가 많고, 또 앞뒤가 바뀐 곳도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번 자세히 살펴봄에 종종 지우거나 뽑아 써서 시권으로 꾸몄으니, 선조의 질탕한 풍류를 항상 사모할 수 있고, 없어져가는 책이 비단처럼 찬란하였다.

그러나 내가 눈이 어둡고 글씨를 잘 쓰지 못하여 사람을 시켜 처음 뽑게 하고 두세 번 대조하였으나 여전히 뜻에 맞지 않았다. 마침 올봄에 지필목을 사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정서하게 하였다. 다만 아이들은 속세에 매몰된 자질로 글씨 쓰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였으므로 벗과 동네 사람 중에 글씨를 쓸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힘을 합쳐 썼으니, 도합 5, 6권이다.⁶¹⁾

이 글은 『시은집』 권두에 실려 있지만, 『시은집』의 서문이 아니고 이용순 선조들의 여러

61) 李龍純, <先公九世遺稿序>, 『市隱集』. “先公遺稿, 散在舊篋, 或有蠹食之編, 或有鼠嚙之處, 以言乎年記, 則屢閱星霜, 且經劫火, 九世以下, 次第繼述, 題詠夥然, 自成箕裘之業, 頗多瓊玉之音, 然而但記取於片牘書案之餘章, 而由來編冊者, 不可以詩卷論之, 則豈可耀人睡眠, 而徒備弊笥之具, 高閣之束矣, 爲其後裔者, 寧不慨恨. 噫, 余早謝科場, 癖於韻語, 稍知糟粕, 蓋取考先公遺稿, 則多有誤書落字處, 亦不無舛錯首尾者, 故三復詳察, 往往塗乙而抄書, 粧出詩卷, 則先公迭宕之風流, 慕之如羹牆, 泯沒之簡編, 煥然若錦繡. 然而以吾眼昏, 未得盡善於書法, 使人初抄, 數三考準, 則猶有不穩於意, 會今春篤買紙筆墨, 使兒曹勤勉精書, 第念兒曹以塵冗埋沒之姿, 未能這這專一於書役, 故要以可書之人於親友洞客中, 並力書之, 合爲五六卷矣.”

유고에 대한 서문이다. 선조들의 유고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기에 이용순이 오류를 바로잡고 정리하여 詩稿 형태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에 ‘도합 5, 6 권’이라고 한 것은 『시은집』, 『탄옹집』, 『사춘헌집』 등 선조들의 문집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글에 따르면 이용순은 편찬을 지시하였을 뿐 자제들을 시켜 正書하게 하였고, 이들만으로는 부족하자 벗과 동네 사람들에게 필사를 맡겼다고 하였다. 병사공파 필사본 문집은 후손과 지역인의 힘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용순이 자제들을 시켜 선조의 문집을 필사하게 한 사실은 그가 남긴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祖先文墨幾人家	선조의 필적이 몇 집이나 있는가
遺失星霜蠹或加	세월 흘러 잃어버리고 간혹 좀먹었네
錦繡塵編連九世	비단 같은 묵은 시편 9대에 이어지고
彩毫手跡映三花	아름다운 필적이 종이에 어리비치네
纔經白首昏眸檢	백발에 어두운 눈으로 점검한 뒤에
竟爲靑氈舊業嘉	마침내 아름다운 가업이 되었네
鈔出兒曹須莫懶	아이들아 게을리 말고 뽑아 쓰거라
雲仍繼述孰堪瑕	후손이 계승함을 누가 흠잡겠는가

- <아이들에게 선조의 유고를 베껴쓰게 하다[戒兒曹謄書先公遺稿]>, 『穆如淸風』 6책

이 시는 1837년에 지은 것이다. 앞서 인용한 서문의 편찬 연도 역시 1837년이니, 필사 작업은 이 해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 이어서 <聖俞 등 여러 종형제에게 보내 부지런히 시권을 뽑아 써준 은혜에 감사하다>⁶²⁾, <유생 崔履惇이 시권을 뽑아 써주기를 권면하고 안마해 준 은혜에 감사하다>⁶³⁾, <유생 최이순이 연일 왕래하며 시권을 뽑아 써주었으니 애정이 도타워 장난삼아 주다>⁶⁴⁾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니, 이용순의 종형제 및 고을 유생 최이순 등이 필사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집 뿐만 아니라 집안에 전해내려오는 선조들의 기록인 ‘家乘’ 역시 자제들에게 필사시켰다.⁶⁵⁾ ‘家乘’은 현전하는 병사공 종가 문헌 중 표제에 ‘家乘譜’라고 기재된 『孝寧大君派收單』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순이 선조들의 유고를 ‘詩稿’라고 언급하였듯이, 병사공가 소장 필사본 문집들은 대부분 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애당초 병사공가 인물들이 시 이외의 저술을 많이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구성은 편자 이용순의 기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찍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시에 몰두하였다”는 서문의 언급이 단서가 된다. 후술하겠지만 시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이 선조들의 유고를 시 중심으로 정리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 문집 4종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은 이임한의 『시은집』이다. 다만 『시은집』은 이임한 개인의 문집이 아니다. 이 책 권두에 讓寧大君, 孝寧大君, 9세조 昌寧公(李

62) <寄聖俞諸從氏謝勉詩卷抄書之惠>, 『穆如淸風』 6책

63) <勉崔生履惇鈔書詩卷且感折枝之惠>, 『穆如淸風』 6책

64) <崔生履惇連日往來鈔書詩卷情愛媿媿戲贈>, 『穆如淸風』 6책

65) 使家兒書家乘不無追遠之懷排律 목여청풍 1책

奎賓), 종9세조 巡邊使公(李箕賓), 8세조 節度公(李灤), 7세조 判官公(李尙淵), 생7세조 和順公(李尙弼)의 시 각 1수가 실려 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靖孝公(효령대군) 이하는 모두 시권이 있었으나 세월을 거치며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단지 집안에서 들은 것을 기록하고 다른 집안에서 기록한 것을 가져다 책머리에 붙였으니, 애석하다. 보는 사람은 용서하기 바란다.⁶⁶⁾

이어서 ‘生六世祖監役, 號市隱公, 詩一卷’이라는 기록 아래 시 178제가 실려 있다. 市隱은 李任漢의 호이다. 이임한의 시는 대부분 친지 및 관직생활 중 동료들과 주고받은 시이며, 金壽興, 趙聖期 등 유명인의 이름도 보인다. 宋時烈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시도 있다. 가장 뒤에 실린 것이 1767년의 작이다. 『시은집』 말미에 “附旁親諸公詩”라는 항목을 두고 李維漢, 李寅漢, 李甲齡, 李弘齡, 李重泰, 李重寅, 李宗齡, 李大齡, 李龜齡, 李敬吾의 시를 덧붙였다. 말미에 “만년에 지은 시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잃어버렸고, 단지 아이 적에 익숙히 외우던 시를 덧붙였으니 애석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⁶⁷⁾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시은집』은 이임한 개인의 문집이 아니라 효령대군 이하 여러 선조들의 시를 엮은 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임한의 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시은집』 다음은 이임한의 차남 李衡齡(1657~1736)의 『탄옹집』이다. 시 110제가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주로 주변 인물들과 주고받은 시, 죽은 이를 애도하는 挽詩이다. 이어서 제문 5편, 서 1편, 그리고 이형령을 애도하는 만사와 제문, 표창을 청하는 사람의 글이 실려 있다.

다음은 이형령의 아들 李重英(1687~1740)의 『양졸당집』이다. 이 책은 이용순의 산정을 거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다른 문집들이 계선지에 필사되어 있는 반면, 『양졸당집』은 계선 없는 공책에 필사되어 있다. 권두에 이중영의 <養拙堂序>가 있다. 양졸당을 자호로 삼은 경위를 설명한 글이다. 70제의 시가 실려 있으며, 墨梅, 薔薇, 怪石 등 화초와 기물을 소재로 삼은 시, 『耽羅志』, 『海東雜記』, 『東京雜記』 등의 책을 보고 지은 시 등이다. 薛聰의 <花王戒>, 金后稷, 黃昌과 官昌의 일화 등을 소재로 삼은 시는 『三國史記』를 보고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과거 준비를 위한 장편 율시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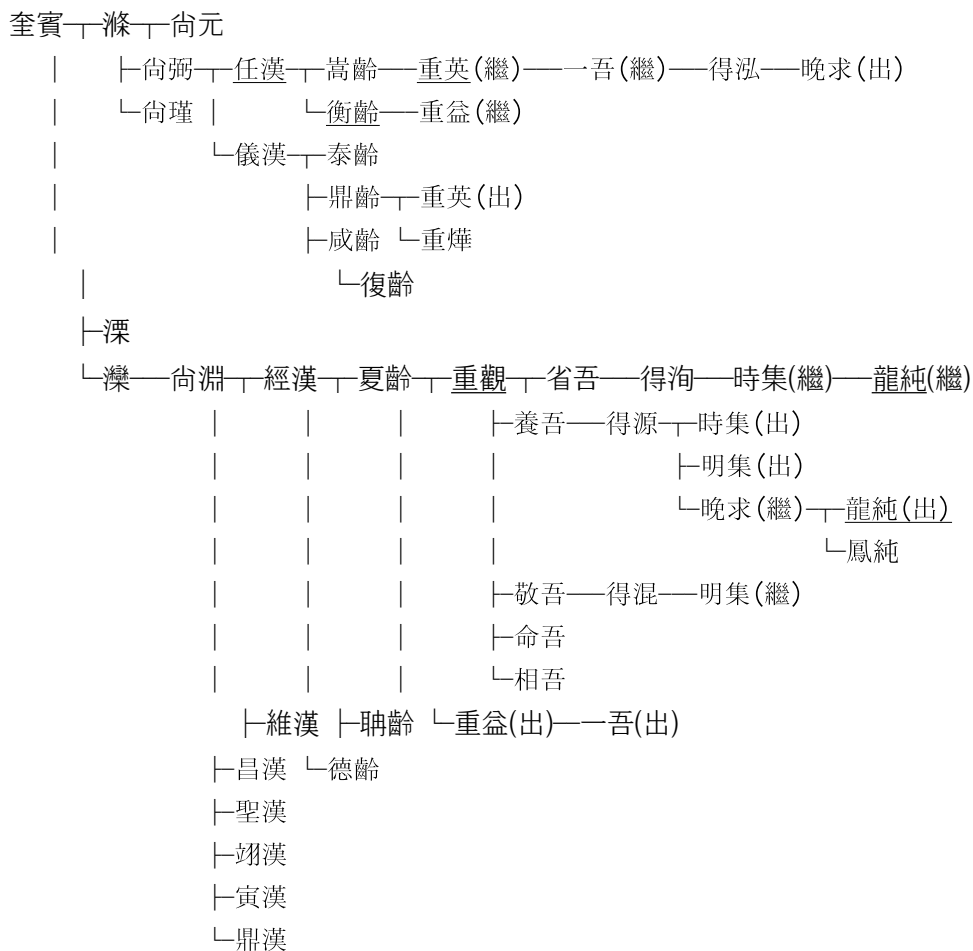
다음은 李重觀(1674~1733)의 『사춘헌집』이다. 시 225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말미에 수록된 雜錄이 주목된다. 宮房田의 폐단, 李敏哲이 제작한 渾天儀, 軍籍의 문제점과 軍布 제도의 개선 방법, 六鎭 방어책, 朋黨의 폐단 등을 조목별로 서술하였다. 이어서 “生祖考僉知公諱得字源字”라고 적힌 황색 첨지가 있고 이어서 시 100여 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용순의 조부 李得源의 문집 『芝湖集』을 덧붙인 것이다.

이상의 문집들은 직계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가문이 入繼와 出繼가 잦았기 때문이다. 효령대군은 6남을 두었으며, 이 중 3남이 寶城君이다. 보성군의 차남이 栗元君이며, 율원군의

66) 李龍純, 『市隱集』. “靖孝公以下皆有詩卷, 屢經星霜, 遺失無傳, 只記其家庭之所聞, 或取於他門之所記, 付于篇首, 惜乎觀者恕之.”

67) 李龍純, 『市隱集』. “晩年詞律非不夥然而都是失傳, 只記其兒時慣誦者一律以附, 可勝惜哉.”

장남이 呂陽君이다. 왕실의 족보 『璿源續譜』에서는 여양군을 派祖로 간주한다. 여양군의 장남이 葑이며, 葑의 3남이 櫓이다. 櫓의 4남이 奎賓인데, 규빈은 葑의 4남 樸의 후사로 출계하였다. 규빈 이하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이용순은 9세조 이규빈 이하 선조의 유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生家와 養家를 망라하였으나, 그의 관심은 아무래도 생가에 기울어 있었다. 생부의 忌日에 지은 시는 많은데 養父의 기일에 지은 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李重觀, 李重英 등 생가와 양가 선조들이 남긴 시에 두루 차운하였으니, 한 가문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李灤을 파조로 삼는 ‘병사공파’라는 명칭이 과연 온당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목여청풍』에 나타나는 영광 사족의 일상

3-1. 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

『穆如淸風』은 李龍純(1779~1849)의 문집이다. 서명 ‘목여청풍’은 『詩經』 <蒸民>의 “윤길

보가 시를 지으니, 뜻이 심원하기가 맑은 바람과 같다.[吉甫作誦, 穆如清風]”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요컨대 심원한 뜻을 담은 시를 모은 책이라는 말이다.

『목여청풍』은 시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1책은 1805~1825년에 지은 시가 실려 있다. 2책은 ‘北關觴詠錄’이라는 부제가 있다. 1827년 4월 13일 서울을 출발하여 5월 16일 함경도 경성에 도착하여 鏡城判官으로 재직 중인 아우 李鳳純을 만나고, 이듬해 1월 귀로에 올라 3월 7일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지은 시를 엮었다. 이 여정은 이용순의 일생에서 거의 유일한 장거리 여행이었다. 그는 이때를 제외하면 영광 인근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3책은 1828~1830년, 4책은 1830~1833년의 시이다. 5책은 연도가 다소 불분명한데, 1~4책의 기간에 해당하는 시도 간혹 보인다. 6책은 1833~1837년, 7책은 1837~1840년, 8책은 1840~1841년, 9책은 1841~1843년, 10책은 1843~1844년, 11책은 1844~1846년, 12책은 1846~1849년의 시이다. 중복되는 시가 종종 보이는 점으로 보아 정리가 미진한 상태인 듯 하며, 여러 사람의 필체로 씌어졌으므로 『시은집』, 『탄옹집』, 『사춘헌집』 등과 마찬가지로 이용순의 자제와 이웃들이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사공 종가 소장 문집이 대부분 1~2책에 불과한 반면, 『목여청풍』은 무려 12책에 달한다. 12책 대부분이 시로 채워져 있으며, 총 3,346제 4,664수로 조선시대 어느 문인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량이다. 1책에 수록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40대 후반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 20여 년간 지은 것이다. 20여 년간 4천여 수의 시를 남겼다면, 거의 매일 시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용순은 시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여러 차례 토로하였으며, 심지어 고질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愛吟眞我癖 시 읊기 좋아하는 것 참으로 나의 고질병이니
微此奈閒閒 이것 아니면 한가로운 시간을 어찌하랴
局戲妻無興 바둑은 아내가 흥미 없고
琴調友不還 거문고는 벗이 돌아오지 않네
四愁三上際 네 가지 시름과 세 가지 여가에
紅葉黃花間 붉은 잎과 누런 꽃 사이에서
雖死詩難廢 비록 죽더라도 시는 그만두기 어려우니
衰翁豈強顏 노인이 어찌 억지로 얼굴을 드랴
- <고질병(痼癖)>, 『穆如清風』 8책

이용순은 젊은 시절 과거에 여러 차례 도전하였으나 고배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응시하러 가는 선비들을 보며 지은 시에서 아쉬움이 짙게 묻어난다. 대신 그는 두 아들의 과거 급제를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장남 이교신이 7세가 되었을 때부터 日課를 정해 놓고 공부를 시켰다.⁶⁸⁾ 장남이 장성하자 山寺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⁶⁹⁾ 결국 이교신은 1846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가문의 명성을 이었다. 이용순은 이교신이 鄉試와 會試를 거쳐 庭試를 치르기까지 과거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다가 결국 급제를 거머쥐자 기쁨을

68) 李龍純, <詠曰兒日課>, 『穆如清風』 1책.

69) 李龍純, <長兒讀山中次日慶錫讀燈下>, 『穆如清風』 1책.

가누지 못하였다.⁷⁰⁾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하느라 경향 각지를 오갔던 아우 이봉순과 달리, 이용순은 지역 사회에 머물러 종가를 지켰다. 한때 바둑과 거문고를 소일거리로 삼으려 하였으나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시로 일상을 기록하는 행위가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네 가지 시름[四愁]’은 後漢 사람 張衡의 <四愁詩>를 인용한 표현으로, 인생의 모든 근심걱정을 시로 토로한다는 말이고, ‘세 가지 여가[三上]’는 말 위[馬上], 침대 위[枕上], 변소 위[厠上]라는 뜻으로 모든 여가를 말한다. “비록 죽더라도 시는 그만둘 수 없다”라는 말에서 시에 대한 그의 애착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내가 내 시를 사랑하여 끊임없이 읊조리니, 종기와 붓을 날마다 찾네.”⁷¹⁾ “앉으면 읊조리기 탐닉하고 누우면 괴로이 생각하여, 백년 인생 늘 수척하니 어찌하리오.”⁷²⁾ “시와 지사 노인은 생사를 함께 하니, 중년에 당나라 송나라의 풍격을 답습했네.”⁷³⁾ 등의 시구에서도 시에 대한 애착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이색적으로 보였던 듯하다.

詩의 道가 적막해진 지 오래이다. 唐나라 시인들은 오래되어 따라갈 수 없고, 宋나라 시는 지나치게 질박하고 明나라 시는 지나치게 화려하여 3백 년 동안 조용하였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간혹 탁월하여 도달하기 어려운 자가 간혹 있었으니, 思庵 朴淳, 松江 鄭澈, 石洲 權輶, 鳴臯 任鑣 등이나 여전히 외딴 나라에 태어나 한스럽기에 내가 문제로 여겼다. 내 벗(이용순)은 이것을 만년에 흥취를 풀어낼 바탕으로 삼았으니, 역시 지나칠 정도로 추구한다는 탄식을 면하지 못한다.⁷⁴⁾

이용순의 벗 金善謙이 이용순의 시에 차운하며 남긴 글이다. 시는 唐詩가 최고이며, 宋詩와 明詩는 나름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시인들이 있지만 唐詩의 성취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김선겸은 이용순이 우리나라 시인들의 뒤를 이어 ‘지나칠 정도’로 시에 몰두한다고 보았다. 우려와 기대가 섞인 표현이다.

이용순은 자신의 일상을 시로 남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9대조 이규빈 이하의 시를 엮은 『시은집』, 『탄옹집』, 『사춘헌집』은 모두 이용순의 주도로 편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부 李得源(1714~1796)이 우리나라 시인들의 시를 선발한 『諸家詩抄』를 정리하여 완성하였다.

『제가시초』는 吳允謙, 金昌協, 盧守愼, 吳道一, 許禎 등의 시를 모은 책이다. 이용순이 조부의 초고를 바탕으로 2년간 정리하여 1817년 편찬하였다. 굳이 이 다섯 사람의 시를 대상

70) 李龍純, <家兒參鄉解榜, 卒入來後, 賀客頻頻, 孤寂之餘, 稍慰心懷, 吟示家兒志喜>; <家兒赴舉會試, 又有除初試庭試寄二律願副區區之望> ; <庭試已過不無望蜀之願偶吟一律> ; <蓮榜來後悲喜交至寓懷有作>, 『穆如清風』 11책.

71) 李龍純, <詩癖>, 『穆如清風』 6책. “吾愛吾詩不絕吟, 吾愛吾詩不絕吟.”

72) 李龍純, <詩苦>, 『穆如清風』 8책. “坐必耽吟臥苦思, 百年長瘦奈如之.”

73) 李龍純, <詩癖>, 『穆如清風』 10책. “詩與芝翁生死風, 中於唐宋龔宗風.”

74) 金善謙, <原韻>, 『穆如清風』 1책. “詩道之寂寞久矣, 李唐諸家, 尚矣不可堪, 而聖宋病於質朴, 皇明失於粉華, 寥寥無聞, 三百年于茲, 我東作者, 間有其人, 而最其卓乎難及者, 卽思庵松江石洲鳴臯, 猶有恨於生長偏邦之見, 余嘗病之, 吾友以此爲晚境遣興之資, 亦不免窮搜極覓之歎.”

으로 삼은 것은 이들의 문집이 집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용순의 『목여청풍』에도 오도일의 『서파집』에 차운한 시가 자주 보인다. 이 책의 권두에 이용순의 서문이 있다. 이득원은 일찌감치 과거를 그만두고 시에 몰두하여 여러 사람의 문집을 널리 구하여 여러 사람의 시를 섭렵하였다고 밝혔다. 이용순은 이어서 “지금 사람들은 옛것을 본받아 읊조리고 시를 지으며 반드시 당나라와 송나라의 율시를 말한다. 아, 시인의 아름다운 시구는 없는 시대가 없으니 어찌 당나라와 송나라만 아름답겠는가.”⁷⁵⁾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시의 성취를 강조한 것이며, 그 자신이 시를 짓는 이유를 말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의 시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목여청풍』에 수록된 4천여 수의 시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목여청풍』의 저자 이용순은 평생 시에 몰두했지만 그의 존재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의 성취는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일상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시로 남겼을 뿐이다. 이로 인해 『목여청풍』에 수록된 시에는 영광 지역 향촌사족의 일상생활이 가감없이 담겨 있다. 『목여청풍』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3-2. 지역사회의 실상과 생계 활동의 묘사

『목여청풍』에 따르면, 이용순의 거주지는 ‘丹芝洞’에 있다. 지금의 영광군 흥농읍 단덕리이다. 이용순의 활동 범위는 영광과 그 인근의 고창, 무장, 무안 등지이다. 그의 아우 이봉순이 1786년 문과에 급제하고 계속해서 관직 생활을 하였으므로 인근 고을 수령들도 이용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인근 고을 수령들이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안부를 물었던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그의 ‘大同稷’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동계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이다. 지방 각지에 마을 단위로 존재했던 대동계 관련 문헌은 지역 사회의 실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연구되고 있다. 영광 지역 대동계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목여청풍』에 실려 있는 대동계 관련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이용순은 1840년을 전후하여 대동계를 결성하였다. ‘面中大同稷’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흥농면의 대동계이다.⁷⁶⁾ 이 대동계는 가을에 한 차례 모임을 열었는데, 이용순은 이 모임을 내심 기다렸던 듯하다. 대동계를 마친 뒤 적적하였는데 찾아온 손님이 반가워 지은 시가 있다. ‘丹芝洞村稷’라는 언급도 보이므로,⁷⁷⁾ 이용순은 그가 거주하던 흥농면 단지동에도 따로 계획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農山(흥농면을 말하는 듯)의 순박한 풍속은 우리 지역 으뜸인데, 흥년 이후 마을 모양이 마음 아프구나.”⁷⁸⁾라고 하며 순박한 고을 풍속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흥년을 만나 피폐해진 모습에 상심하였다. 이처럼 향촌 자치 조직의 운영에 참

75) 李龍純, <諸家詩抄序>, 『諸家詩抄』, “今之人, 只爲師古, 吟哦誦讀, 騷壘詩壇, 言必稱唐宋之律, 噫, 詞人律士之佳句清韻, 無代無之, 奚獨專美於唐宋也.”

76) 李龍純, <面中大同稷修正之後吟示文生喜奎要和>, 『穆如清風』 8책; <十月大同稷後吟示文生君五要和>, 『穆如清風』 9책; <大同稷後逐日寂寥羅生萬瞻乘暮來到吟示一律>, 『穆如清風』 9책.

77) 李龍純, <題丹芝洞村稷案兼示羅萬瞻要和>, 『穆如清風』 9책.

78) 李龍純, <題本面大同稷並小序>, 『穆如清風』 6책. “農山淳俗冠吾鄉, 歎後村容即可傷.”

여한 사실도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교분을 맺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인다.

이용순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 활동은 농사였다. 농사에 관한 시를 자주 지었는데, 벼농사와 보리농사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논으로 걸어가서 농사를 보고 풍경을 기록하다>⁷⁹⁾, <올벼를 옮겨심다>⁸⁰⁾, <보리 타작을 읊다> 등의 시가 보인다. <담배를 심었으나 일이 많아 김매지 못하다>⁸¹⁾로 보아 담배 농사도 지었다. 담배를 소재로 지은 시도 여러 편인데, 직접 피우기 위해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⁸²⁾

이용순은 일가의 힘으로는 경작하지 못할 정도로 넓은 토지를 소유했다. “식구는 여덟 명이 못 되는데, 농사지을 곳은 백 이랑이 넘네”⁸³⁾라고 하였다. ‘백 이랑’은 정확한 면적이라 보기 어려우나, 일손 없이 경작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토지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의 시를 보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노비를 부린 것도 아니다. 집안일을 돕는 아이종이나 여종을 제외하면 노비의 존재는 찾을 수 없다. 이용순의 토지를 경작한 사람은 고용된 일꾼이었다.

雨彼公田及我私	저 공전에 비가 내려 내 밭까지 미치니
耕夫理耜報農期	농부가 쟁기 손질하여 농사지을 때를 알리네
要看景物西疇過	경치 구경하려고 서쪽 밭두둑을 지나
爲飭傭丁半日隨	일꾼을 단속하려고 반나절 따라다녔네
坐久暗滋佳句思	오래 앉으니 시구 생각이 남몰래 불어나
立談謾策短筇垂	서서 이야기하다 짧은 지팡이 짚고 다니네
晚來着興田家事	늦그막에 농사일에 흥을 붙이니
猶勝草堂就睡遲	초가에서 늦게까지 자는 것보다 낫네

- <사람을 고용하여 밭을 개간하고 앞의 시의 운을 써서 읊다[雇人墾田用前韻野吟]>, 『穆如清風』 1책

비가 내리자 일꾼들을 재촉하여 밭갈이에 나선다. 반나절 동안 일꾼을 감독하며 앉아 있노라니 좋은 시구가 떠오른다. 비록 직접 농사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꾼을 감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집에서 늦잠자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였다. 이처럼 농사를 앞두고 밭갈이를 할 때도 일꾼을 고용하였고, <사람을 고용하여 모내기하다>라는 시를 보면 모내기할 때도 일꾼의 힘을 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⁴⁾ 올벼를 옮겨 심을 때도 일꾼 세 사람을 고용하였고,⁸⁵⁾ 잡초를 제거할 때는 아이종을 시켰다.⁸⁶⁾ 수확을 마치고 타작할 때도 일꾼을 고용했다.

79) 李龍純, <步出水田觀農記景>, 『穆如清風』 권5

80) 李龍純, <移早稻>, 『穆如清風』 6책.

81) 李龍純, <種南草多事不耘>, 『穆如清風』 1책.

82) 李龍純, <詠虞美人草> 『穆如清風』 3책; <虞美人草>, 『穆如清風』 10책, <虞美人草>, 『穆如清風』 11책.

83) 李龍純, <賣鬻買牛>, 『穆如清風』 6책. “家口誠非八, 爲農百畝過”

84) 李龍純, <雇人秧坂>, 『穆如清風』 1책. “春及西疇布穀鳴, 農人告我即翻畊, 連雲四野童謠麥, 滿水平田孰播秔, 強欲主翁頻看檢, 恐違時日早經營, 昨纔黍種今秧坂, 秋獲自期洞內驚.”

85) 李龍純, <移早稻>, 『穆如清風』 6책. “靑田一片圓如榻, 赤脚三傭俯似蚩.”

86) 李龍純, <飭稚僕鋤草>, 『穆如清風』 9책.

夕陽收盡打租班	해질녘 벼 타작을 모두 마치니
簸後塵生役者顏	까부른 뒤 일꾼 얼굴에 먼지 생기네
九月圍場開是日	9월 타작마장 이날 열었더니
半庭篝斛較前山	마당에 쌀섬이 앞산과 비슷하네
老丁斗去心猶細	늙은 일꾼은 말질 마치고도 마음이 조심스럽고
小子看來坐似閒	아이는 한가로이 보며 앉아있네
牆外斜陽官吏到	담 너머 해 지자 관리가 왔으니
也應先索董門還	먼저 세금부터 찾고 돌아가리라

- <벼 타작[打租]>, 『穆如清風』 8책

이처럼 이용순의 농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일꾼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꾼의 수급은 경작의 풍흉에 좌우되었다. “해마다 고용 노비가 집에 찾아와 다투어 들어오려 하였으나 풍년이 들었으므로 한 사람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다. 세태가 그러한가, 모질고 게을러서 그러한가. 미워서 우연히 옳다.”⁸⁷⁾라고 하였으니, 흉년에는 일꾼을 고용하기 쉬웠지만 풍년에는 고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흉년에는 너도나도 일하기를 원하지만, 조금만 풍년이 들면 아무도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꾼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웠던 듯하다. “지난 밤 빗소리 듣고 모진 일꾼에게 주의를 주어 부드러운 얼굴에 좋은 말로 타일렀네”⁸⁸⁾라는 구절에서 오히려 을의 처지에 놓인 주인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고용 노비[雇奴]’라고 하였지만 일꾼의 신분이 노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을 일꾼으로 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순이 집안일을 돕는 노비를 소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노비를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던 듯하다.

賤者豈知義	천한 놈이 어찌 의리를 알리오
主人強拘居	주인이 억지로 붙잡아두는 것이네
切憎忘玉食	좋은 밥 잊으니 몹시 먹고
奇怪願江魚	강 물고기 바라니 기괴하구나
秘跡逃淵藪	숨으로 달아나 자취를 숨기니
無顏入里閭	마을로 들어올 면목이 없네
幸逢麥秋節	다행히 보릿가을 만나자
携酒逐巾車	술 들고 수레를 따라오네

- 아이종이 달아났다가 한 달 뒤에 들어오다[兒奴逃走過朔入來], 『穆如清風』 11책

노비는 의리를 모르니 밥을 먹여준 은혜도 잊고 달아난다. 하지만 달아난다고 뽐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노비가 달아났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 주인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조선시대 일기 자료에 흔히 보인다. 더구나 힘쓰는 사내종도 아닌 아이종은 달아나면 살 길

87) 李龍純, <年年雇奴踵門爭入矣豐稔之故一不願從炎涼耶頑慢耶憎而偶吟>, 『穆如清風』 8책.

88) 李龍純, <臨農飭園丁>, 『穆如清風』 11책. “前宵聽雨戒頑備, 誘語淳淳自婉容.”

이 더욱 막막하다. 이용순은 제발로 찾아오는 도망노비를 굶주리면 주인에게 돌아오는 사냥
매에 비유했다.⁸⁹⁾

일꾼을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노비 관리도 번거로웠지만 무엇보다 농사에 해가 되는
것은 가뭄이었다. 농사가 전에 없는 풍년을 맞이할 듯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가뭄으로 해를
입는 상황도 벌어졌다.⁹⁰⁾ “멀리서 온 시장 상인들에게 호소하고, 물길 옆에서 서로 다투
네”⁹¹⁾라는 구절은 부족한 곡식을 마련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상인에게 부탁하고, 물이 귀
한 탓에 싸움이 벌어지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흉년이 들면 농사만 망치고 마는 것이 아니다. 선영에도 피해가 간다. 선영에 부지런히 소
나무를 심었으나, 굶주린 백성이 그 소나무 껍질을 캐어 먹자 안타까워하며 지은 시가 있다.
이 때문에 이용순은 흉년이 들면 백성과 함께 슬퍼하고, 풍년이 들면 함께 기뻐하였다. 농사
에 생계가 달렸던만큼, 설령 풍년을 맞이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去歲纔風熟	작년에 겨우 풍년 들었기에
穀物足氓戶	민가에 곡식이 풍족하였네
今歲更何如	올해는 또 어떠한가
春事起農圃	논밭에서 봄갈이 하였지
半年均雨澤	반년 동안 비가 고루 내려
庶草向蕃廡	온갖 풀이 무성히 덮었네
農人歡相謂	농민은 기뻐하며 서로 말하길
前歲可復覩	작년을 다시 보겠다 했네
足食豈徒然	양식 풍족한 것 어찌 이유 없으랴
風俗回淳古	풍속이 옛날처럼 도타워졌네
問汝是誰力	문노라, 이것은 누구의 힘인가
宮中勞聖主	궁중에서 수고하는 성상 덕택이네
已自踐祚初	이미 즉위하신 초기부터
宵旰總萬務	밤낮으로 모든 업무 힘썼네
明斷破奸孽	분명한 판단으로 간신을 제거하고
紀綱董文武	문관과 무관의 기강을 잡았네
八域懷仁恕	팔도 백성이 어진 성상 그리워
有若孩仰乳	아기가 젖을 바라보듯 하였네
天心實潛孚	하늘의 마음이 몰래 부합하여
三載調風雨	삼년 동안 비바람이 순조로웠네
愚民視偶然	어리석은 백성은 우연으로 알고서
嬉嬉知黍稌	풍작인 줄만 알고 희희낙락하네

89) 李龍純, <逃奴還來>, 『穆如清風』 11책. “一歲風霜都是險, 飢鷹自附是分明.”

90) 李龍純, <麥事大登, 數七八十老人初見之豐云矣, 今因日旱漸至枯損, 且當移種, 望霓支離, 大侵之餘, 頗有搔動, 以詩排悶>, 『穆如清風』 6책

91) 李龍純, <憫旱>, 『穆如清風』 1책. “呼訴遠從場市輩, 相爭間自水途邊.”

人情願豐給	사람들은 풍년 들기 바라지만
豐給誠可懼	풍년은 참으로 두려워할 만하네
粟多不善施	곡식이 많아도 잘 베풀지 않으면
儲胥怨所聚	저축은 원망을 부르네
酒多不知節	술이 많아도 절제할 줄 모르고
荒亂起恒舞	만취하여 항상 춤추네
安逸淺智慮	안일하면 생각이 알아지고
肥澤生驕侮	살찌면 교만함이 생겨나네
况復水與旱	더구나 홍수와 가뭄은
氣數恒參互	기후가 항상 바뀌는 법
父母雖孔邇	부모가 비록 가까이 있지만
及此猶靡怙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없네
美食陳在前	좋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糟糠不可吐	지게미와 쌀겨를 뱉을 수 없네
絳帛滿篋笥	베와 비단이 상자에 가득해도
衣服有度數	의복은 정해진 법도가 있네
節財慎王法	재물 절약하고 국법을 조심하여
毋遭有司怒	관원의 노여움 만나지 마라

- <풍년을 경계하다[豐戒]>, 『穆如清風』 12책

풍년이 들자 농민들이 모두 기뻐한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인지라 먹을 것이 넉넉해지자 풍속도 좋아졌다. 이용순은 이를 임금의 은덕으로 돌린다. 임금이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고 나라의 기강을 잡은 덕택에 날씨가 순조로워 풍년이 들었다는 것이다. 모두가 풍년을 기뻐하지만, 이용순은 풍년이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한다. 곡식이 많아도 베풀지 않으면 원망을 초래하고, 남은 곡식으로 술을 빚어 만취하면 안일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언제 기후가 바뀌어 흉년이 들지 모르니, 풍년일수록 곡식과 재물을 절약하고 국법을 신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용순은 농사를 지어 양식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부가 활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였다. 그는 만년에 별통을 여러 개 놓고 양봉을 하였는데, 판매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양봉을 했지만 한 달 사이 벌이 점차 사라지는 사건도 겪었다.⁹²⁾ 여가가 생기면 새끼줄을 꼬았다. 새끼줄 꼬는 광경을 묘사한 시가 여러 편이다. 다만 이것도 일꾼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3년 동안 지붕을 수리하지 않아 지붕을 이을 새끼줄이 필요해지자 “아우 집에 다행히 일꾼이 있어 밤에 불러 새끼 꼬아 온전히 만드네”⁹³⁾ 하였다. 이밖에 배추 농사를 짓고,⁹⁴⁾ 닭을 키우고,⁹⁵⁾

92) 李龍純, <買置蜂桶者, 今爲五年之久, 其間不無見效, 一朔之內, 徐徐沒走, 憤然有作五言排律>, 『穆如清風』 12책.

93) 李龍純, <詠索絢>, 『穆如清風』 1책, “不茅疏屋越三年, 風捲時時露數椽, 弟家幸有傭民者, 夜要索絢極計全.”

염료 확보를 위해 쪽풀을 채취하는 등,⁹⁶⁾ 그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조달하고자 하였다.

3-3. 연안 지역의 특색

앞 절에서 살펴본대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짓는 광경을 소재로 삼은 시는 향촌사족의 문집에 흔히 보인다. 다만 이용순이 거주한 영광은 해안 지역이라는 특성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바닷물이 넘쳐 침수 피해를 자주 입었다는 기록이 그 사례이다. “앞 들판에 바닷물 넘쳐 수확을 놓쳤으니 단옹은 가을이 걱정되어 어찌하나.” “백성은 생업 잃어 먹을 것이 없고, 나도 생계가 어려워졌네.”⁹⁷⁾ 등의 시구이다. 그의 선영이 있는 錢島 역시 침수 피해를 자주 입었다.⁹⁸⁾ 침수는 가을에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수를 앞두고 토지가 침수되자 “농사가 잘 되어 추수할 가망이 있었는데 18일 새벽 바닷물에 잠겨 보기에 시름겹고 일 통하다”⁹⁹⁾ 하였다.

이용순은 그의 거주지에 가까운 法聖浦를 다스리는 法聖僉使와 가깝게 지냈다. 이용순은 법성포의 霽月亭에서 인근 문인들과 모여 시를 주고받았는데, 법성포는 전국에 설치된 8개 漕倉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세곡 운반선의 모습을 묘사한 시가 더러 보인다.

正月已歸二月加	1월은 지나고 2월이 왔는데
西湖先聞稅帆斜	서호에 조운선 왔다고 먼저 들었네
商女擇巫占出水	상인 여자는 무당 찾아 출항할 날 고르고
拖工舉網走晴沙	벧사공은 그물 거두어 백사장으로 달려가네
市聲鎮日人如蝟	시장 소리 연일 이어지고 사람은 고슴도치털 같은데
海色無風浪作花	바다에 바람 없고 파도가 물결치네
畫鷁旋裝漁利得	고기 잡은 이익 얻어 배에 짐을 실으니
萬錢身手向人誇	돈 많은 신세를 남에게 자랑하네

-<바다로 가는 나그네가 배에 짐을 싣다[海客裝船]>, 『穆如清風』 11책

서호는 법성포 인근 바닷가를 말한다. 이용순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다. 조운선이 출발을 앞두자 상인 여자는 무당을 찾아가 출항할 길일을 거두고, 평소 어업에 종사하던 벧사공은 조운선에 타기 위해 그물을 거두고 포구로 달려간다. 법성포 일대는 연일 시장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제법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었는지 마지막 구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이밖에도 쌀섬을 지고 나르는 일꾼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관리의 모습을 묘사하였으며,¹⁰⁰⁾ 간혹 세곡이 부족하면 황해도 海州에서 신고 온 쌀을 보탬다는 사실도 밝혔

94) 李龍純, <種菘子惡鷄移所>, 『穆如清風』 10책.

95) 李龍純, <失鷄>, 『穆如清風』 12책.

96) 李龍純, <採染>, 『穆如清風』 6책.

97) 李龍純, <海溢沈穡>, 『穆如清風』 12책. “海溢前郊穡失收, 丹翁其奈白藏憂.” ; “民何失業收無食, 我亦爲生闕又疎.”

98) 李龍純, <見錢島民家沈水浮毀惻然偶吟>, 『穆如清風』 1책.

99) 李龍純, <農作頗多有秋之望, 十八日曉頭, 爲海水塹沒, 所見愁痛>, 『穆如清風』 12책.

다.101)

염전을 묘사한 시가 자주 보인다는 점도 해안 지역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염전을 관찰한 시이므로 이용순이 염전을 소유하지는 않았던 듯하나, 19세기 염전의 실상을 묘사한 자료는 흔치 않으므로, 이 시들은 상당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試看重重島	시험삼아 겹겹의 섬을 보니
知是斥鹵場	소금 굽는 곳인줄 알겠구나
潮減三川白	조수가 빠져 세 줄기 시내 맑고
烟生十里紅	연기 올라 십 리가 붉네
薰風民財阜	훈풍 불어 백성의 재물 넉넉하고
出拜賈人忙	나가는 상인은 바쁘구나
無晝兼無夜	낮도 없고 밤도 없으니
民業足江鄉	강가 마을에 백성의 생업 풍족하네

- <염전[鹽場]>, 『穆如清風』 12책

섬이라고 묘사한 것이 실제 섬인지, 아니면 소금이 쌓인 모습을 비유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함련에서는 조수가 빠진 염전에서 소금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염전 덕택에 백성의 재물이 넉넉하고 생업이 풍족하다고 하였다.

江上頗多不播田	강가에 파종하지 않은 밭이 제법 많으니
居民鹽利自何年	사는 백성이 언제부터 소금으로 이익 보았나
生涯片片無根島	조각조각 뿌리 없는 섬에서 생애를 보내고
勝槩蒼蒼幾點烟	푸른 하늘 몇 점 연기는 빼어난 경치라네
早晚海潮晨夜測	아침 저녁 조수를 밤낮으로 측량하고
去來車馬夕陽懸	수레와 말이 오가니 석양이 내려앉네
爲言斥鹵齊壇外	제나라 강역 밖에 소금 나는 땅이 있어
賴活非徒井里千	덕택에 살아가는 마을이 천 집이 넘네

- <염전(鹽田)>, 『穆如清風』 7책

‘파종하지 않은 밭’은 파종할 필요가 없는 밭, 즉 염전을 말한다. 언제부터 이곳에 염전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이곳저곳 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은 장관이다. 염전을 운영하려면 조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소금을 실어나르는 수레와 말이 오가는 가운데 해가 진다. 소금 생산으로 큰 이익을 보았던 제나라처럼, 이 지역에서도 염전 덕택에 살아가는 집이 많다고 하였다.

江上何多片片山	강가에 조각조각 산이 얼마나 많은가
---------	---------------------

100) 李龍純, <董漕>, 『穆如清風』 7책. “負石役人爭躡足, 禦船官吏不逃眸.”

101) 李龍純, <白米船(海州船人載米而泊)>, 『穆如清風』 6책. “長腰數百石, 一夜太山來, 黃海同泛梗, 丹湖作渡盃, 販宜添正貢(茂長稅米不足於裝載, 故貿取於海船故及之)散可救荒財, 有虞眞如是, 凶年不足矣.”

鹹鹺爲利數年間	몇 해 동안 소금으로 이익 보았네
淺如滄海三桑變	얕기는 바다가 뽕나무로 세 번 변한 듯하고
靑似齊烟九點環	푸르기는 아홉 점 연기가 둘러싼 듯하네
煮處全身皆漆者	굽는 곳에서는 온 몸이 모두 칠흙 같고
市時行旅繞鷗班	팔 때는 행상이 갈매기처럼 둘러싸네
君看春日漁舟載	그대는 보게나 봄날 고깃배에 싣고서
繼續中流不暫閒	물길에 이어지니 잠시도 한가롭지 않네

- <염전[鹽庄]>, 『穆如淸風』 5책.

바닷가에 소금이 산처럼 쌓여 있다. 조수가 빠진 염전은 수심이 얕고, 소금을 굽느라 푸른 연기가 피어오른다.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햇빛에 타서 온 몸이 시커멓다. 소금을 사러 온 상인들이 세떼처럼 모여서는 배에 싣고 가는데, 그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염전의 번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靑山數里一孤舟	몇 리 떨어진 청산에 외로운 배 한 척
舟楫相望入小樓	바라보이는 배들이 작은 누각으로 들어가네
商女但知魚藿重	상인 여자는 물고기와 미역이 중한 줄만 알고서
遍村呼價似強求	마을 다니며 값을 부르니 억지로 파는 것 같네 102)

- <먼 섬의 미역배가 와서 비파고개에 정박하다[遠島藿船來泊琵琶嶼]>, 『穆如淸風』 10책

‘미역배[藿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미역을 채취하는 배로 보인다. 섬이나 인근 해안지역에서 와서 정박하고 미역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역 장수는 여성이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미역 사라고 소리친다. 강가에 매여 있는 ‘곽선’을 묘사한 시도 있다.¹⁰³⁾ 비교적 흔히 보이는 풍경이었던 듯하다.

小艇非漁舟	작은 배가 고깃배도 아닌데
島人泛彼洲	섬 사람이 저 모래섬에 띄우네
縱來葦一葉	비록 갈대 잎 하나 같지만
伴宿岸雙鷗	물가에서 한 쌍 갈매기와 함께 묵네
閨卜釵應典	규방에서는 응당 비녀를 잡히리니
旅商縵幾收	행상은 돈을 얼마나 거두었나
高樓俯瞰處	높은 누각에서 굽어보니
往往足詩愁	종종 시 지을 생각 충분하네

- <김 배[海衣船]>, 『穆如淸風』 6책.

제목의 ‘해의(海衣)’는 김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예로부터 김을 먹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채취하고 유통하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이 시는 조선시대 김 유통에

102) 李龍純, <遠島藿船來泊琵琶嶼>, 『穆如淸風』 10책.

103) 李龍純, <藿船繫在江口>, 『穆如淸風』 11책.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해의선’은 김을 채취하는 배로 보이는데, 육지에 정박하여 판매까지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섬 사람’이 배를 띄웠다고 하였으니, 김의 유통은 연안 또는 도서의 백성이 맡았을 것이다. “행상은 돈을 얼마나 거두었나”라는 구절에서 제법 소득이 쏠쏠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마을 아낙이 비녀를 잡히면서까지 김을 구입한 탓이다.

3-3. 일상의 사물과 소외된 인물에 대한 관심

향촌사족은 교유의 범위가 넓지 않으므로 가족 및 친척과 주고받은 시가 많기 마련이다. 이용순 역시 일가친척 및 인근 지역의 문인들과 시를 자주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용순은 시를 지을 능력을 지닌 남성 성인들보다는 소외되기 쉬운 존재들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아내이다. “당신 보며 갑자기 몇 번이나 바뀌었나, 매년 생일 만나면 새로 시를 지어 축하했네.”¹⁰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순은 아내의 생일을 맞이하면 잊지 않고 시를 지어 축하했다.¹⁰⁵⁾ 아내가 병을 앓다가 나오면 역시 시를 지어 기념했다.¹⁰⁶⁾

둘째는 딸과 손녀들이다. 딸보다 아들을 중시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관념이었지만, 이용순이 아들이나 손자를 위해 지은 시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더라도 학업을 권면하는 다소 딱딱한 내용이다. 반면 딸과 손녀에게 준 시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다. 어린 딸이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묘사한 시,¹⁰⁷⁾ 세 살 먹은 손녀의 단정한 용모와 총명한 자질을 기뻐하며 지은 시,¹⁰⁸⁾ 두 외손녀를 만난 기쁨을 노래한 시, 수십 년 만에 친정을 찾아온 딸을 반가워하며 지은 시¹⁰⁹⁾ 등이다.¹¹⁰⁾ 『목여청풍』에 수록된 글은 모두 시인데, 유일하게 실려 있는 산문이 이모 김씨를 위한 제문이다.¹¹¹⁾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였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겠다고 하자 기꺼이 가르쳐주었고,¹¹²⁾ 여종의 남편이 죽자 그를 애도하는 장편시를 지었다.¹¹³⁾ 물론 반드시 보기 좋은 모습만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

一婢頑愚骨	여종 하나가 드세고 어리석은데
晝宵睡失廉	밤낮으로 염치 없이 잠을 자네
火焦驚竈犬	불에 데이면 부뚜막의 개에 놀라고
水溺恟泉蟾	물에 빠지면 연못의 두꺼비 무서워하네
喘息衰翁恰	기침소리는 늙은이와 흡사하고
醜顏媼母兼	추한 얼굴은 모모와 같구나

104) 李龍純, <老妻生朝>, 『穆如清風』 12책. “看取家鄉幾甲子, 每當晬日賀新篇.”
 105) 李龍純, <老妻回甲感吟>, 『穆如清風』 7책; <六月初九日老妻甲朝>, 『穆如清風』 7책.
 106) 李龍純, <老妻病甚見廖喜作>, 『穆如清風』 6책.
 107) 李龍純, <詠稚女弄膝>, 『穆如清風』 1책.
 108) 李龍純, <孫女年三歲其儀用端妙性姿聰慧余甚愛之戲吟三十六句排律>, 『穆如清風』 3책.
 109) 李龍純, <大谷女息李室數十年後始得歸寧...>, 『穆如清風』 11책.
 110) 李龍純, <到大谷示女息寓喜>, 『穆如清風』 4책.
 111) 李龍純, <拜省姨母金氏山所時祭文>, 『穆如清風』 7책.
 112) 李龍純, <無寐之夜, 隨廳僮冠玉昆季, 請學諺文, 余甚嘉之, 手書本文, 時時課教, 稍有可悟之漸, 渠亦跳踉欣喜, 眞箇可觀處, 偶吟>, 『穆如清風』 10책; <燈下戲教稚隸諺文>, 『穆如清風』 12책.
 113) 李龍純, <哀婢夫德述>, 『穆如清風』 5책.

禁之莫可奈 금지해도 어찌할 수 없으니
 無語對山尖 말없이 뾰족한 산만 바라보네
 - <드센 여종이 수시로 잠을 자다[頑婢無時睡]>, 『穆如清風』 11책

식생활도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소국(菜羹), 참외(食菰) 미나리(食美芹) 등이 밥상에 올랐는데, 자주 먹은 음식은 靑魚이다. 청어를 읊은 시가 자주 보인다. 그런데 이 청어는 영광 앞바다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동해에서 잡은 것이다.¹¹⁴⁾ 동해에서 잡은 청어를 상인이 배에 실어 와서 팔았던 것이다. 멀리서 가져온 것인데도 가격이 저렴하였기에 영광 지역 주민들이 많이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價廉通野峽 값이 싸서 시골까지 통하고
 物薄到貧家 물건이 흔해 가난한 집까지 도달하네
 海口他鮮貴 바닷가에 다른 생선은 귀한데
 蔬腸爾味奢 채소만 먹다가 사치스러운 맛이네
 - <청어(靑魚)>, 『穆如清風』 7책.

이밖에도 “청어는 값이 싸니 누군들 사지 않으랴. 집집마다 굽는 연기 피어오르네”¹¹⁵⁾라는 구절에서 청어가 이 지역 사람들의 식탁에 흔히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호품으로는 담배와 차를 즐겼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용순은 직접 담배 농사를 지었다. 차는 소화를 돕는다는 이유로 자주 마셨다. “늙은 몸이라 소화를 위해 항상 밥 먹은 뒤 자주 찾네”¹¹⁶⁾라고 하였다.

원예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매화 화분을 두고 지은 시가 여럿 있는데(盆梅開花, 詠房中盆梅), 연꽃과 잣나무까지 화분에 길렀다. 이밖에 당국(唐菊), 영산홍(映山紅), 사계화(四季花), 오죽(烏竹), 백일홍(百日紅), 금전화(金纏花), 해당(海棠), 모란(牡丹吟) 등 다양한 화초를 대상으로 시를 지었다.

들불놀이(夜觀野燒), 더위팔기(賣暑), 연날리기(紙鳶), 귀밝이술(耳明酒), 약밥(飯烏), 다리밟기(踏橋) 등 정월 대보름의 풍속도 자세히 묘사했다. 유두일을 맞이한 마을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노래하며 술마시는 광경(流頭翌夜村氓擊缶謳吟終夜飲酣), 7월 보름 마을 사람들이 술 마시는 모임(七月望村氓宴飲, 鄉徒飲酒) 시장에서 벌어지는 씨름(七月十四日脚戲甲市) 목여청풍 3도 자세히 관찰하였다. 닭싸움을 묘사한 장편시 <鬪鷄行>도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 모기(蚊), 파리(蠅), 지네(蝮)의 괴로움도 자주 묘사하였다.

타지에 가서도 새로운 풍경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함경도에서는 돌로 지붕을 얹은 돌너와 집을 보다가 강원도에 와서는 나무조각으로 지붕을 얹은 너와집을 발견하고 시로 묘사하였다.¹¹⁷⁾ 귀리[耳牟]를 원료로 北黃紙 만드는 광경도 놓치지 않았다.¹¹⁸⁾ 사찰에서 종이 만드

114) 李龍純, <東海靑魚初入盤中>, 『穆如清風』 9책.
 115) 李龍純, <靑魚>, 『穆如清風』 11책. “靑者價廉誰不買, 千家浮出爛烹烟.”
 116) 李龍純, <茶飲>, 『穆如清風』 10책. “老骨爲消下, 常尋飯後多.”; <啖茶>, 『穆如清風』 4책; <茶罐>, 『穆如清風』 7책; <茶罐>, 『穆如清風』 10책,
 117) 李龍純, <關北民舍, 太半陶瓦, 北靑只是石塊, 今見淮陽, 皆用木瓦, 亦一詩料, 馬上口占>, 『穆如清風』 2책.

는 광경을 묘사한 시도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楮外生麻滿寺間	닥나무 외에 삼이 나서 사찰에 가득하니
腰鎌役少無頑	허리에 낫을 차고 부지런히 일하며 게으름 피우지 않네
僧惟佛者爲生苦	승려는 부처 믿는 사람이라 생애가 고달프지만
我尙何人歎跡間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자취를 감추었나
白衲巾車朝復夕	아침 저녁으로 승려와 수레가 오가고
蒼烟窟窟澗兼山	굴에서 푸른 연기 올라 개울과 산에 가득하네
查兒染却雲霞想	아이는 구름과 노을 생각에 물들었는지
起問蓬萊羽客班	일어나 봉래산 신선의 반열을 묻네

- 이용순, <사찰에서 삼지를 만드는 일[寺中麻役]>, 『穆如淸風』 4책

이 시는 이용순이 피서를 위해 찾아간 고창 선운사의 부속 암자인 內院庵에서 지은 것이다. 닥나무와 삼은 종이의 주재료다. 닥나무로 만든 종이를 楮紙, 삼으로 만든 종이를 麻紙라고 한다. 승려들이 낫을 가지고 닥나무와 삼을 베다. 고된 노역이지만 부처를 믿는 승려는 천대받는 신분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 종이를 실어나르는 승려와 수레가 부지런히 오가고, 굴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닥나무와 삼의 껍질을 벗겨 물에 삶는 과정을 묘사한 듯하다. 곱게 풀어진 재료를 얇게 뜨면 종이가 완성된다.

조선시대 사찰에서 종이를 생산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사찰은 종이의 원료인 나무와 물이 풍부한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 광경을 묘사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모든 견문을 시로 표현한 이용순은 사찰에서 종이를 만드는 모습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닥나무를 자르고 물에 담가 발로 떠내는 종이 만드는 공정은 <白紙五律>에도 묘사되어 있다.¹¹⁹⁾

4. 결론

병사공 종가에는 다수의 필사본 문집이 소장되어 있다. 이 문집의 저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으나 관력은 크게 내세울 것이 없었고, 당시 정계와 학계, 그리고 문단을 지배한 주요 인물들과 교류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병사공가 인물들과 같은 ‘향촌사족’이 남긴 저술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모든 연구자의 고민거리이다.

문집에 수록된 시문을 통해 이들의 내면세계를 파악할 수는 있겠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이들의 문학적 성취를 애써 부각하려는 시도 역시 한계가 자명하다.

향촌사족의 저술은 지역사회의 실상을 증언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전남 영광 지역의 문헌이 풍부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목여청풍』과 같이 일상을 시로 기록한 문헌은 여타 자료들이 말하지 않은 세세한 사실들을 증언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과 지명, 그리

118) 李龍純, <黃紙>, 『穆如淸風』 2책.

119) 李龍純, <白紙五律>, 『穆如淸風』 11책. “削來剡溪楮, 浮出水中簾.”

고 이 책이 묘사한 19세기 영광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은 당시 지역사회의 실상을 재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문집 외에 가치가 높은 자료는 일기이다. 현재 병사공 종가에는 이임한의 『일기』, 이중관의 『사춘헌공일기초』, 이봉순의 『진주공일기』 등이 있다. 주로 관직생활을 중심으로 기록한 관력일기이나, 지역사회 관련 기록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춘헌(四春軒) 이중관(李重觀)의 생애와 관직 활동

조광현_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조광현(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사춘헌(四春軒) 이중관(李重觀)의 생애와 관직 활동

目 次

- I. 머리말
- II. 이중관의 가계와 생애
- III. 이중관의 관직 활동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중관(李重觀, 1674~1733)은 전주이씨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정치가이자 관료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는 소론 온건파로서 숙종·경종·영조를 충실히 보필한 신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학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에 영광 병사공파 이란(李瀾, 1582~1628) 종가에서 전래되어 온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어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됨에 따라,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이중관을 학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된 자료는 총 526점으로, 고문서 149점, 고서 373점, 유물 2점, 서화 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는 이중관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의 관직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고신(告身) 59점과 관직 내력을 기록한 『사춘헌공일기초(四春軒公日記草)』 1책, 『진양상정(晉陽詳定)』 1책이 전한다. 또한 이중관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작성한 책문을 필사한 『사춘헌공책문사집(四春軒公策問私集)』, 이중관의 생애를 되짚어볼 수 있는 『사춘헌공행적(四春軒公行蹟)』이 각각 1책씩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미간행 시문집인 『사춘헌집(四春軒集)』도 현전한다.

이 밖에도 이중관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관찬 사료가 다수 남아 있다. 특히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숙종대부터 영조대까지 이중관과 관련된 기사가 무려 985건에 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중관 인물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1차·2차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종가에서 전래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가전된 족보와 『사춘헌공행적』의 기록을 토대로 이중관의 가계와 생애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기탁된 고신 59점을 중심으로, 『관직일기』와 『승정원일기』 기사를 보완하여 이중관의 관직 생활을 숙종 시기, 경종 시기, 영조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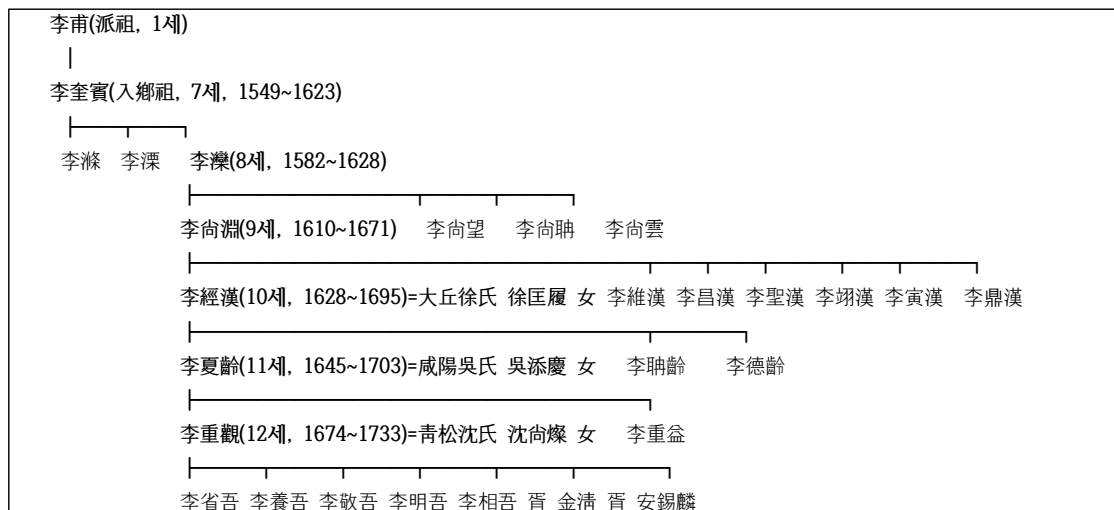
II. 이증관의 가계와 생애

1. 이증관의 가계

전라남도 영광군 흥농읍과 대마면에 세거하는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파 종가는 효령 대군 이보(李補)를 파조(派祖)로 삼는다. 7세손 이규빈(李奎賓, 1549~1623)이 영광군에 입향한 뒤, 8세손 이란 대에 이르러 문중이 형성되었다. 이란은 이규빈의 셋째 아들로, 자는 자하(子河), 호는 죽호정(竹湖亭)이며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영중군으로 인조를 호위하여 강화도로 피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628년(인조 6) 춘신사로 심양에 갔을 때 통역관 박경룡의 무고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였다. 이후 김상헌(金尙憲), 박항(朴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상연(李尙淵, 1610~1671) 등의 노력으로 이듬해 관작이 복권되었다.

이란의 장남 이상연은 한성부 판관을 역임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부친 이란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소를 올려 구명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부친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다. 이상연은 이후 부친의 묘소를 현재의 전라남도 영광군 흥농읍 단지동에 조성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이상연의 장남 이경한(李經漢, 1628~1695)은 효력부위를 역임하였으며, 사후 승지에 추증되었다. 그는 대구서씨 서광리(徐匡履)의 딸과 혼인하여 3남을 두었으며, 장남 이하령(李夏齡, 1645~1703)이 곧 이증관(李重觀)의 부친이 된다.

<표 1.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파의 가계도>



2. 이증관의 생애

이증관(李重觀)은 자가 국빈(國賓)이며, 호는 사춘헌(四春軒)이다. 1674년(현종 15년), 한성부 연화방(蓮花坊)에서 아버지 이하령과 어머니 함양 오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문중에서 전래되어 오는 『사춘헌공행적』에는 이증관이 어릴 적부터 빼

어난 용모와 총명함을 지녔고,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영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종조부들과 조모인 대구 서씨가 이종관을 눈여겨보며, 일찍부터 학문에 정진하도록 이끌었다.

1681년(숙종 7년), 이종관이 7세 되던 해에 동곽(東郭) 이현(李璣, 1654~1718)에게 입문하여, 오명항(吳命恒, 1673~1728), 조태억(趙泰億, 1675~1728)과 함께 수학하였다. 8세 때에는 조모 대구 서씨의 재종제였던 몽어정(夢魚亭) 서문중(徐文重, 1634~1709)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종관을 따로 불러 그가 익힌 학문 수준을 시험해 보았다고 전해진다. 서문중은 숙종 대에 영의정을 지낸 문신으로, 학식이 깊어 『조야기문(朝野記聞)』, 『역대재상연표(歷代宰相年表)』 등 여러 저술을 남긴 인물이다.

『사춘헌공행적』에는 서문중과의 일화도 전해지는데, 어느 날 분재 매화를 가리키며 시를 지어 보라고 하자, 이종관이 즉석에서 “꽃이 핀 것은 동풍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요, 눈이 온 세상을 가득 덮었어도 봄은 집 안에 가득하구나 (花開不借東風力, 雪滿乾坤春滿家)”라는 시를 읊었고, 서문중은 크게 기뻐하며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선물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10세에는 조인수(趙仁壽)에게서 『한서(漢書)』를 배우고, 동강(東岡) 조상우(趙相愚, 1640~1718)에게 서법(書法)을 배웠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글씨와 문장에 뛰어난 인물로 손꼽혔다. 15세에는 반궁별제(泮宮別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여러 인사들과 교유하였다. 특히 송성명(宋成明, 1674~1740), 조경명(趙景明), 조석명(趙錫明)과 깊이 교유하며 “청교사갑인회(淸橋四甲寅會)”라는 문회(文會)를 만들어 함께 학문을 연마하였다. 조경명과 조석명은 그의 스승 조인수의 자제들이기도 하다.

1691년(숙종 17년), 17세의 나이로 한성부 서윤 심상찬(沈尙燦, 1656~?)의 딸인 청송 심씨와 혼인하여, 5남 2녀를 두었다. 아들들은 이성오(李省吾), 이양오(李養吾), 이경오(李敬吾), 이명오(李命吾), 이상오(李相吾)이며, 두 딸은 각각 안동 김씨와 순흥 안씨 가문에 출가하였다.¹²⁰⁾

이후 이종관은 21세부터 25세까지 감시(監試), 별시(別試) 등을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하였고, 26세인 1699년(숙종 25년), 생원시에서 2등 11인에 올라 입격하였다. 성균관에서 과거 준비에 힘쓰면서도, 노성(魯城)에 있는 대학자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으며, 27세부터 35세까지는 성균관 유생으로서 윤증을 국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상소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36세였던 1710년(숙종 36년), 성균관 생원의 자격으로 공릉참봉(恭陵參奉)에 추천되어 제수되었으나, 곧 정호(鄭澔, 1648~1737)의 탄핵을 받아 영광으로 낙향하게 되었다. 이후 10년간 성리학 공부에 전념한 그는, 46세인 1719년(숙종 45년), 문과 병과 4인으로 급제하였다. 문과 급제 이후, 그는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다양한 관직을 거쳤으며, 59세에는 진주목사(晉州牧使)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병이 악화

120) 문중에는 이종관과 아들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가서(家書)』라는 간찰첩이 전해지고 있다.

되어 부임지에서 별세하였고, 영광군 선영에 장례를 치렀다.

이중관은 성장 과정에서 조모 대구 서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인척들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학문적으로는 동광 이현, 동강 조상우 등에게 사사했고, 오명항, 조태억, 송성명 등과 깊이 교류하였다. 또한 명재 윤증을 찾아가 배우고, 그의 국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상소한 경험은 이중관의 정치적 성향과 관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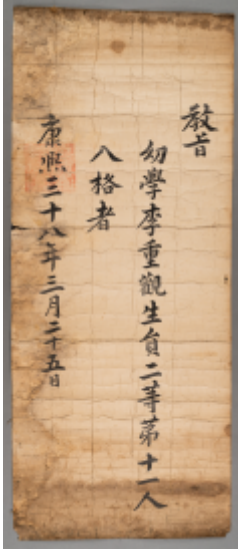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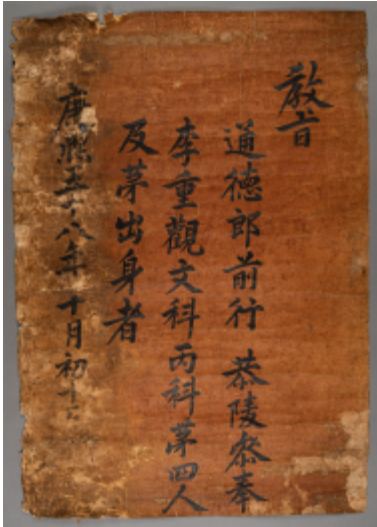


Ⅲ. 이중관의 관직활동

본 장에서는 이중관의 관직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중에 전래되어 온 이중관의 관직 임명장인 고신(告身)을 중심으로 하되, 함께 전해지는 관직 일기인 『사춘헌공일기초』와 『사춘헌공행적』, 그리고 이중관이 진주목사로 재임 중 시설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발급한 『진양상정(晉陽詳定)』을 참고하여 왕대(王代)별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숙종시기(1699~1720)

숙종 시기는 이중관이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 도입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그는 주로 성균관 유생으로서 과거시험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생원시 입격과 문과 급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1. 이중관 과거시험 자료>

		
<p>① 이중관 백패(白牌)</p>	<p>② 이중관 홍패(紅牌)</p>	 <p>③ 사춘헌공책문사집</p>

①번 자료는 1699년(숙종 25)에, 이중관이 26세의 나이로 기묘년 식년시(己卯年 式年試)에서 생원 2등 11위로 입격하면서, 예조로부터 발급받은 합격 증서이다. 이 시험에서 이중관은 전체 100위 중 16위를 차지하였다. 『사춘헌공행적』과 『사춘헌공일기초』에 따르면, 그는 생원시에 입격하기까지 총 세 차례의 과거시험을 치렀다. 즉, 1692년(숙종 18)의 감시(監試), 1694년(숙종 20)의 증광별시(增廣別試), 그리고 1698년(숙종 24)의 감시에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했으나 복시에서는 낙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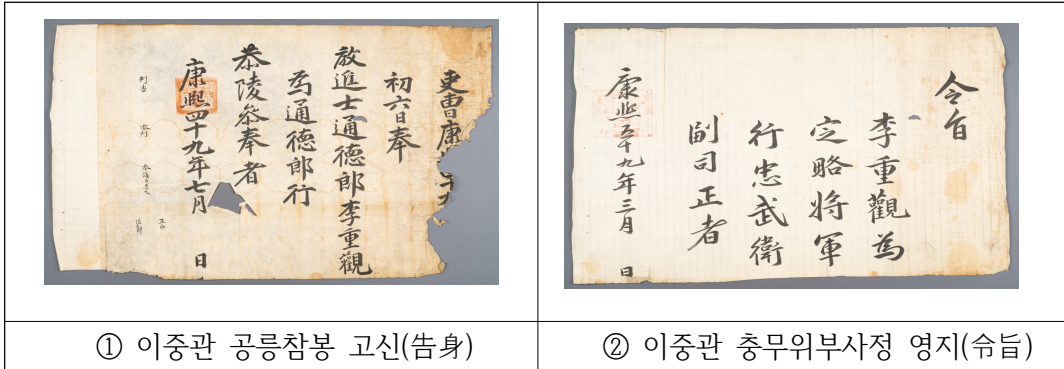
이후 1699년 식년시에서 비로소 생원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성균관에 입학한 이후, 이중관은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대낮부터 삼경(밤 11시~1시)까지 공부에 몰두하였고, 많은 유생들이 그를 따랐다고 한다. 그 결과 1702년(숙종 28)에 치러진 별시(別試)에서는 초시와 복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상중(喪中)이었던 관계로 전시(殿試)는 응시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이중관은 계속 과거에 도전하였다. 한 번은 명경과(明經科)에 응시했으나, 『효경(孝經)』에서 한두 개의 보조어구를 잘못 말한 탓에 시험관이 이를 문제 삼아 낙방하기도 하였다. 이때 시험관 중 한 명이었던 서종태(徐宗泰, 1652~1719)는 이중관의 조모인 대구 서씨의 재종질이었다. 시험이 끝난 뒤 서종태는 대구 서씨를 찾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반드시 이중관은 대과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료가 될 것이다”라고 위로하였다고 한다.

③번 자료는 이중관이 대과 시험을 준비하며 직접 작성해 둔 책문(策問)을 모은 책이다. 이 자료는 필사본으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문의 내용은 재용(財用), 법금(法禁), 성지(城池), 택장(擇將), 병기(兵器), 병재(兵財), 재이(災異), 과거(科擧), 양전(量田), 수령(守令), 기강(紀綱), 의약(醫藥), 간신(諫臣), 성음(聲音), 조수(鳥獸), 입지(立志), 성학(聖學)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또한 문제(問題)로는 ‘선비’, ‘천하의 일’, ‘산에 대하여’, 그리고 소요부(邵堯夫, 소옹(邵雍))의 『안락와중자이(安樂窩中自貽)』 시를 인용하여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 ‘비석’, ‘천하의 일’, ‘진작(振作)’ 등에 대한 물음과 답변이 실려 있다.

②번 자료는 이중관이 1719년(숙종 45)에, 46세의 나이로 증광시(增廣試) 문과에서 병과 제4인으로 급제하였을 때 발급된 문서이다. 문서에는 “통덕랑(通德郎) 전(前) 공릉참봉(恭陵參奉) 이중관이 문과 병과 제4인으로 급제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를 통해, 이중관은 생원 또는 진사 신분이 아닌, 이미 관직을 지닌 상태에서 대과에 급제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현존하는 고문서와 『사춘헌공행적』, 관찬 사료 등에서도 그가 대과에 급제하기 전 이미 관직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숙종대 이증관 관직 임명 자료>



①번 자료는 이증관은 1710년(숙종36) 7월에 성균관의 추천으로 공릉참봉에 임명한다는 임명문서이다. 공릉(恭陵)은 조선 8대 예종의 왕후인 장순왕후 청주한씨의 능을 가리키며 참봉은 그 능을 관리하는 9품직이었다. 그러나 이증관은 공릉참봉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사헌부에서 성균관의 추천이 잘못되었으므로 이증관의 관직을 물리라고 논핵(論劾)했기 때문이다. 이증관이 관직을 추천받기 전에 대사성이었던 이제(李濟, 1654~1714)가 성균관의 폐단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추천되는 자격을 정식으로 정했으나 이증관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직을 물리라고 한 것이었다. 당시 이제는 성균관에서 관직 추천 대상을 “첫째, 묘당(廟堂)에서 50세 이상의 경학(經學)에 밝은 자 둘째, 통독(通讀)이 우등(優等)한 자 셋째, 여러 번 부거(赴舉)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자”로 규정하였다. 사헌부의 논핵을 받은 이증관은 공릉참봉의 관직을 잃게 되었다. 이에 성균관 유생들은 권당(捲堂)을 행사하며 부당함을 토로하였다.¹²¹⁾

문중에 전래되어 온 이증관의 행적과 일기에는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정호가 사적인 감정을 품고 이증관을 탄핵하려 했으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으므로 성균관의 추천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하여 탄핵했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정호의 소행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기와 행적에서는 그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사헌이었던 정호는 그 당시 최석정(崔錫鼎, 1646~1715)과 조태억 등 소론의 중심 인물들을 탄핵했으며, 윤증을 비판한 홍주형(洪胄亨)을 두둔하고 있었다. 이에 1714년(숙종40)에 이증관은 정치에 미련을 버리고 영광군 석곡촌으로 낙향하였다.

이증관이 정치에 미련을 버리고 낙향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1705년(숙종 31)에 모친 함양오씨와 조모인 대구서씨가 죽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모인 대구서씨의 죽음이 이증관에게 큰 아픔이었으며, 노론과 소론의 정치 분쟁에 휘말려 관직도 잃어버린 상황이 그를 낙향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영광군으로 낙향한 이증관은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결심으로 사춘정(四春亭)을 짓고, 학문에만 전념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호이기도 한 사춘은 소강절(邵康節)의 시 가운데 “언제나 사계절이 봄 같다(長有四時

121) 『숙종실록』 48권, 숙종 36년 7월 18일 신사 2번째기사

春)”는 구절에서 뜻을 취한 것이었다. 영광군에서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살았던 이증관을 다시 과거시험을 보게 한 계기는 바로 문중 사람이었다. 종조부들은 이증관의 재능이 안타까워 계속 대과 시험을 치르게 타이르고 있었다. 이증관은 1718년(숙종44)에 영유현령(永柔縣令)이었던 장인 심상찬을 방문하여 문안하였다. 영유현은 현재의 평안남도 평원으로 영광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다. 그곳에서 몽오재(夢梧齋) 심상정(沈尙鼎, 1680~1721) 만나 10여일 동안 강론을 하였다고 한다. 심상정은 이증관과 함께 1699년 식년시 생원진사에 함께 입격하여 막역한 사이였다. 영유현의 장인과 심상정을 만난 이후 결국 이증관은 다시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 그 결과 1719년 4월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경축하기 위해 치러진 증광시에서 병과 제4등으로 급제하였다. 9월 15일 과거 급제 이후 10월에 방방(放榜)을 행하고 곧이어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가주서에서 갈리어 임시직인 부사과에 임명되었는데 ②번 자료가 그때 받은 임명문서였다. 당시에는 숙종이 물러나고 경종이 왕세자로써 대리청정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영지(令旨)라는 임명문서를 받았다.

2. 경종시기(1720~1724)

경종 시기는 이증관이 본격적으로 관직 활동을 시작한 도약기이자 동시에 시련기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계 인물로서 주로 언관으로 활약하였다. 따라서 노론의 공격으로 관직을 잃었다가 복권되기도 했으며, 같은 소론 내부에서도 정치적 입장이 다른 급진파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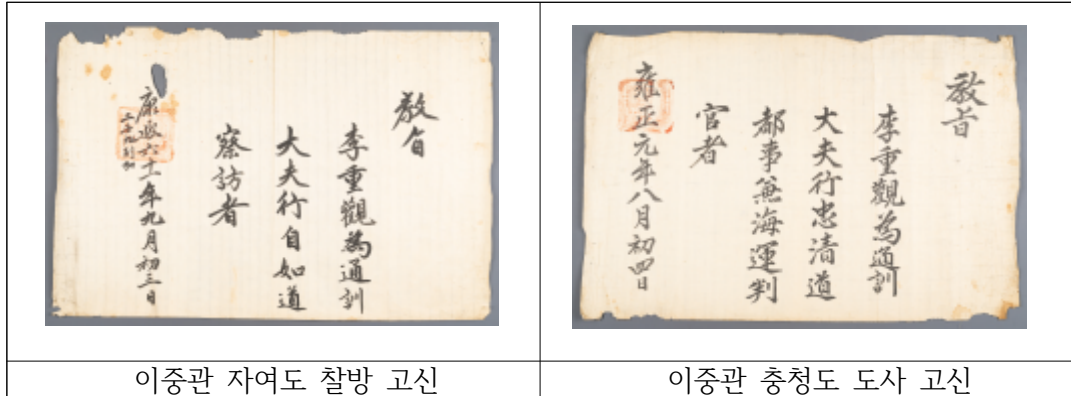
경종의 즉위와 함께 이증관의 관직 생활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조선시대 외교문서 작성을 담당하던 승문원에서 불과 2년 사이 정9품 부정자에서 정자로, 다시 저작을 거쳐 정7품 박사에게 이르기까지 빠른 승진을 거듭하며 실력을 쌓았다. 그러던 중 1722년(경종 2) 6월, 제원도 찰방에 임명되었다. 제원도는 현재의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역(驛)으로, 찰방은 그 역을 관할하는 종6품 관직이었다.

그러나 당시 승문원 도제조였던 최석항(崔錫恒, 1654~1724)이 경종에게 주청하여, 승문원의 중요한 업무를 위해 이증관의 제원도 찰방 임명을 취소하고 다시 승문원으로 복귀시켰다.

최석항은 당시 소론의 4대신 중 한 명으로, 신임사화에서 소론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의 주청 덕분에 승문원으로 돌아간 이증관은 중대한 업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다.

이후 이증관은 1722년 8월 29일 자여도 찰방에 임명되었다. 이는 그의 첫 외관직이었다. 그는 9월 1일 경종에게 사은숙배(謝恩肅拜)를 드리고, 10월 2일 부임하였다. 부임하자마자 안동과 의성의 감시 참서관으로 차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마시 동문이자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이정제(李廷濟, 1670~1737)를 만나 회포를 풀기도 했다. 이정제 역시 소론으로, 이증관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였다.

<그림 3. 경종대 이종관 외관직 임명 자료>



자여도 찰방으로 부임한 이종관은 8개월 동안 자여도에 누적된 폐단을 바로잡아 역졸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참 시설도 확충하였다. 그 후 1723년(경종 3) 영의정 조태구(趙泰耇, 1660~1726)는 ‘오십출육(五十出六)’의 예에 따라 이종관을 정6품으로 승진시킬 것을 건의하였고, 경종은 이를 받아들여 그를 사헌부 감찰에 임명하였다.

이후 이종관은 곧 종5품 전라도 도사로 제수되어 부임하기 위해 공주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김일경(金一鏡, 1662~1724)이 “이종관은 전라도 사람이므로 전라도 도사의 임무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청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이종관은 피험(避嫌)을 청하며 부임하지 않고 임천군에 머물렀다. 이에 좌의정 최석항은 연석(筵席)에서 이종관을 충청도 도사로 개차(改差)할 것을 주청하였고, 경종의 허락을 받았다. 8월 4일 충청도 도사 겸 해운판관에 임명된 이종관은 15일 사은숙배 후 부임지로 떠났다. 부임지로 향하던 중 17일 예산에 머물면서 면천 지역 전답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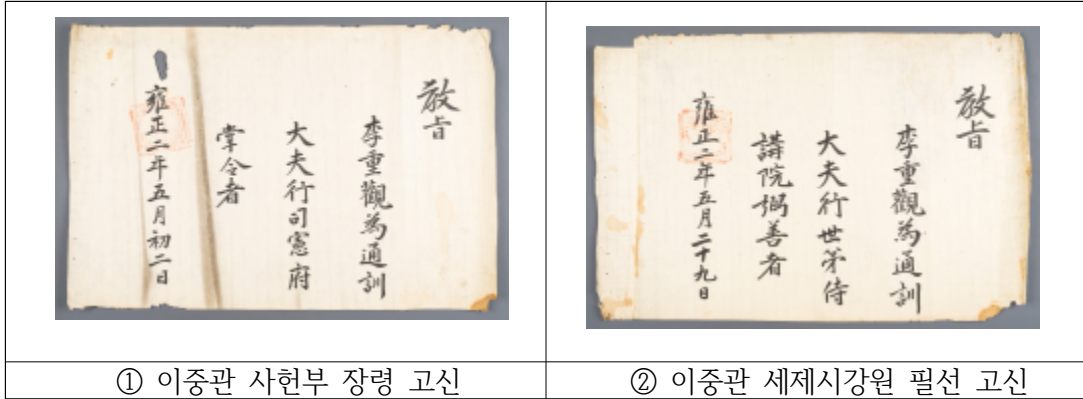
부임 이후 그는 충청도의 식년시를 주관하였는데, 임천과 니성에 이종관의 친척이 많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 시험 결과가 사적인 인맥에 의한 것이 아님이 증명되자, 모두가 그의 정직함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종관은 충청감사 윤동교(尹東郊, 1676~1730)와 함께 재해 지역을 돌며 전답을 조사하고 세금 감면을 시행하였다. 그러자 호조판서 유봉휘(柳鳳輝, 1689~1727)가 “세금 감면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요청하는 초기(草記)를 올렸다. 이에 이종관은 다시 피험을 청하며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1724년(경종 4) 3월, 새로 부임한 충청감사 권익관(權益寬, 1676~1730)은 조운(漕運) 시기가 임박하자 이종관에게 출사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존 유봉휘의 탄핵 문제를 이유로 끝내 부임하지 않고 사직 상소를 올렸다. 이에 새 호조판서 조태억은 곡물 운송의 차질을 우려하여 이종관의 사직을 수리하고 군직으로 보임해 달라 청하였고, 경종은 이를 윤택하였다.

곧이어 이종관은 3월에 예조좌랑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조정에 나아가 경종에게 호서 지방 세금 감면과 관련된 일을 소명하였고, 경종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예조좌랑으로서 광릉(光陵)·건원릉(健元陵)·정릉(貞陵)을 적간(摘奸)하면서 정릉참봉 오수채

(吳遂采)의 직무 이탈 혐의를 고발하여 파직시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그는 연이어 사헌부 지평과 장령에 임명되었다.

<그림 4. 경종대 이종관 경관직 임명 자료>



이종관이 언관인 사헌부 지평과 장령에 임명되었을 때는 신임사화(辛壬士禍)를 겪은 이후로, 조정은 소론이 집권하던 시기였다. 신임사화는 숙종 승하 후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신축년(1721년)과 임인년(1722년)에 벌어진 사건으로, 경종을 보호하려는 소론과 영조를 추대하려는 노론 간에 일어난 다툼이었다. 소론 급진파 김일경의 주도로 노론 세력을 역모로 몰아 대거 축출하였고, 이후에는 축출된 노론과 왕세제 연잉군(훗날 영조)의 신변 문제를 두고 소론 내부의 온건파와 급진파가 격렬히 대립하였다.

이종관은 언관으로서 소론 온건파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였다. 그는 이미 외관직에 있을 때 소론 급진파인 김일경과 유봉휘의 탄핵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최석항과 조태억 등의 적극적인 신원 활동 덕분에 누명을 벗고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소론 온건파는 경종을 보호하며 소론 중심의 집권을 추구하되, 목호룡의 고변으로 시작된 임인옥사에서 연잉군을 배제하려 했고, 급진파는 연잉군을 포함시키려 하였다. 이처럼 신임사화를 계기로 촉발된 소론 내부의 갈등은 이종관의 관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종관이 사헌부 지평과 장령으로 있었던 기간은 세제시강원 필선으로 체임될 때까지 약 두 달 남짓이었다. 그동안 그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경종에게 빈번히 논계(論啓)를 올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의 비리 적발과 풍기 단속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된 지 하루 뒤인 1724년(경종 4) 4월 3일, 그는 전 전라감사 유명홍(俞命弘)의 탐욕과 각종 비리를 논계하였고, 경종은 이를 윤허하였다. 이후 신계현령 이형수(李馨秀)의 탐학을 고발하였으며, 화폐를 불법으로 주조하다 적발된 김만영(金萬英)의 처벌도 요청하였다.

둘째, 노론 세력에 대한 처벌 요청

그는 다른 언관들과 함께 유배 중이던 노론 4대신 가운데 김창집(金昌集, 1648~1722)과 이이명(李頤命, 1658~1722)에 대해 참시(斬屍)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목호룡의 고변으로 역모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홍철인(洪哲人)·홍의인의 부친 홍언도(洪彦度)를 절도안치(絶島安置)할 것을 주청하여 관철시켰다.

셋째, 경종 시해 음모 사건의 진상 규명

경종이 피를 토하는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이종관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는 내의원 이시필(李時弼)과 수라간 상궁 김씨를 잡아 국청(鞠廳)에서 신문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종은 이를 불허하였다.

넷째, 소론 급진파 탄핵

유생 이석조(李錫祚)가 상소를 올려 내의원 이시필과 궁녀를 두둔한 이광좌를 논죄하면서, 김일경 일파와 이광좌 일파 간에 설전이 오갔다. 이때 이종관은 김일경 일파의 논리를 반박하며 그들을 모두 체직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종은 이를 받아들여 체직시켰다. 이 일로 인해 김일경 일파는 더욱 이종관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후 1724년 5월 29일, 이종관은 세제시강원 필선으로 임명되었다. 필선은 정4품 관직으로, 시강원에서 주관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자리였다. 이종관은 왕세제 연잉군의 스승이 되었다. 그는 경서(經書)의 집주 가운데 구두법이나 의미 해석이 잘못되어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선유(先儒)들의 여러 견해를 인용해 입증하였고, 때로는 성현의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짚어내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왕세제는 자주 질문했고, 이종관의 해설이 상세하고 명확하다며 칭찬하곤 했다.

그러나 필선에 임명된 지 50일도 지나지 않아, 유필원(柳弼垣)을 필두로 김일경 일파가 동원한 유생들의 비판 상소가 수십 건에 달하자 이종관은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이조참의 심공(沈珙)은 글을 지어 경종에게 올리며 이종관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다.

조정에서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어떤 이는 재능과 학문으로, 또 어떤 이는 식견과 분별력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지금, 굳은 소신을 지키며, 눈치 보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입으로 시서(詩書)를 외우고, 문장과 글재주가 풍부한 자 또한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종관은 이 두 가지 미덕을 겸비하고 있으니,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정도가 참으로 알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종관은 여러 차례 임금 앞에서 강론에 나섰을 때, 그 해설이 명쾌하고 통달하였으며, 이를 듣는 손님들과 궁중의 신하들까지도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대(專對, 임금과 직접 응대하는 직무)의 임무, 그리고 시강(侍講)의 책임을 두고, 만약 그를 제쳐두고 다른 이를 고르려 한다면, 대체 누구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의 명성이나 경력은 저와 비슷한 수준이며, 그를 대신하여 다른 곳에 보직을 주거나, 왕세자의 스승 자리(胄筵)에 임명된 자도 앞뒤로 수없이 많았는데, 어째서 유독 이 사람만이 뚜렷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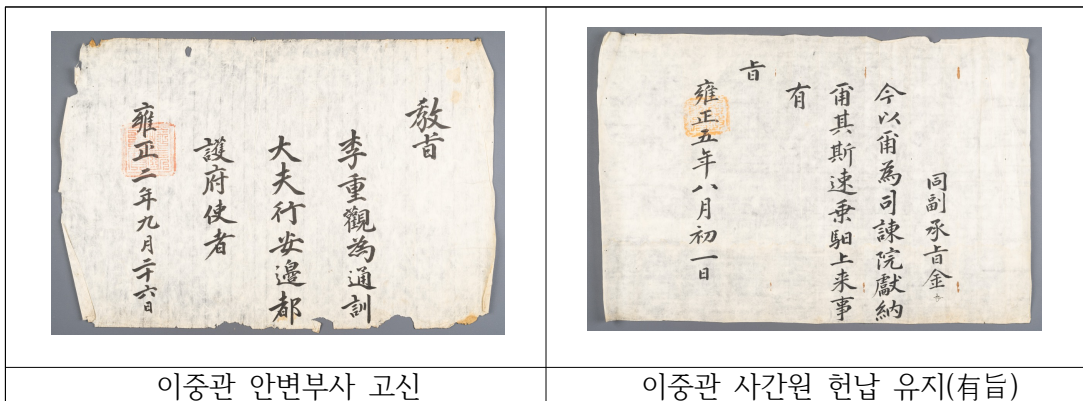
게 배척을 당했겠습니까? 이는 혹시 유생(儒臣)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예전에 이형수(李馨秀) 임용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보복하려는 것은 아닙니까?¹²²⁾

이조참이 심공은 유생들의 지나친 상소들이 개인적임 감정이 작용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가 필선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했음을 강조하였다. 이형수는 지난날 이종관에 의해 탄핵된 사람으로 유필원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한다. 결국 이종관이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유생들의 상소는 일단락되었다.

3. 영조시기(1724~1733)

영조 시기는 이종관의 관직 활동에 있어 전성기였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경종을 지지한 소론계 인물이었으나, 영조가 왕세제 시절에는 그의 스승이기도 했다. 또한 소론 급진파에 맞서 영조의 신변을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한 온건파였다. 무엇보다 이종관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왕족이었으며, 그의 조모 대구 서씨와 영조의 왕비 정성왕후는 친척 관계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그는 주로 시종신(侍從臣)으로서 승지에 임명되었고, 안변부사·경주부윤·진주목사 등 주요 고을의 수령직을 역임하였다.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자, 기존의 소론 급진파는 축출되고 노론이 다시 집권하였다. 그 결과 이종관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김일경 일파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림 5. 영조대 이종관 관직 임명 자료>



1724년(영조 즉위년) 10월, 이종관은 안변부사에 임명되었다. 부임한 이후에는 고을로 오고 가는 사신들의 음식과 접대를 아전과 백성들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하였으

122) 『四春軒公行蹟』：時，沈公珙為史曹參議，陳章辨之，有曰：夫朝廷取人，或以才學，或以見識。而顧今堅守確論，不事顧瞻者幾人？口誦詩書，文詞贍富者亦幾人？而今李某兼此兩美，儕流之所愛重者實不淺。況某屢次登筵之際，講解之開發通敏，賓客宮僚，莫不稱善。專對之任，侍講之責，如欲另擇而捨斯，其誰？名論踐歷，與某相上下，充遣於異備，擬於胄筵者，前後何限？而獨某顯被其斥，無乃儒臣別有昨不取於某而然歟？

며, 수개월 동안 정사를 살피는 가운데 행정은 청렴하고 처리 또한 간결하여 “관청이 절문(寺門)처럼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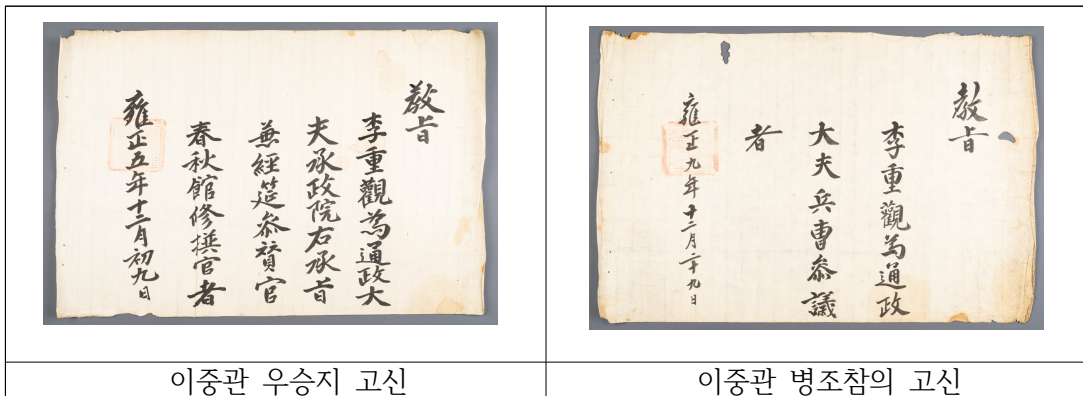
또한 그는 북방 풍속이 무예만 숭상하고 학문을 중시하지 않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사족을 교육하는 일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았다. 매일 초하루마다 갓을 쓴 소년들을 불러 강독과 작문 시험을 보게 하고, 포상과 징계를 명확히 하여 장려하고 경계하자, 사족들이 크게 분발하여 문풍(文風)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1725년(영조 1) 4월, 정세가 급변하였다. 복귀한 노론은 소론 세력을 다시 축출하고자 하였다. 노론은 우선 소론 급진파인 김일경·유봉휘 등을 척결한 뒤, 대사헌 정형익(鄭亨益, 1664~1737)을 필두로 온건파였던 이광좌·최석항·조태억 등을 파면하고, 민진원·정호 등을 불러들였다. 이때 이종관도 온건파로 분류되어 함께 파직당했다.

그는 한성 밖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김시환(金始煥), 한사득(韓師得, 1689~1766)과 함께 시를 논하고 바둑을 두며 지냈으며, 매일 밤 『주역(周易)』 「계사(繫辭)」편을 암송했다고 한다. 이듬해 1726년(영조 2)에는 임천군 도화동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이듬해 영광군 지곡으로 낙향하였다.

1727년(영조 3) 영조는 정형익·민진원·정호를 파직하고 이광좌·조태억을 다시 등용하는 정미환국(丁未換局)을 단행하였다. 이때 영광군에 있던 이종관에게도 사간원 헌납직을 제수하며 속히 상경하라는 유지(有旨)를 내렸다. 유지는 조선시대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해 수령자에게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였다. 영조는 8월 1일 동부승지 김상규(金尙奎)를 보내 이종관에게 왕명을 전달하며 즉시 상경해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하였다.

<그림 6. 영조대 이종관 경관직 임명 자료 >



상경한 이종관은 사간원 헌납, 장약원 정, 상의원 정을 거쳐 10월 18일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동부승지는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이때부터 이종관은 경주부윤으로 나아갈 때까지 줄곧 승지직을 맡았다. 그는 좌부승지·우부승지·좌승지·우승지를 차례로 역임하며 영조 곁에서 보좌하였다. 주요 업무는 속직과 입직, 왕명을 출납하는 일이었는데,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이종관은 여러

차례 사직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영조는 번번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728년(영조 4) 1월, 영조는 민진원·정호의 유배지를 한양 인근으로 옮기려 하였다. 이에 이종관은 강직한 성품에 따라 원칙을 내세우며 더 먼 곳으로 정해야 한다고 복역(覆逆)하였다.

이에 영조는 자신의 뜻을 거스른 것을 문제 삼아 이종관을 파직하였다. 좌의정 조태억은 그의 파직 소식을 듣고 영조에게 차자를 올려 파직 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인견하여 다시 청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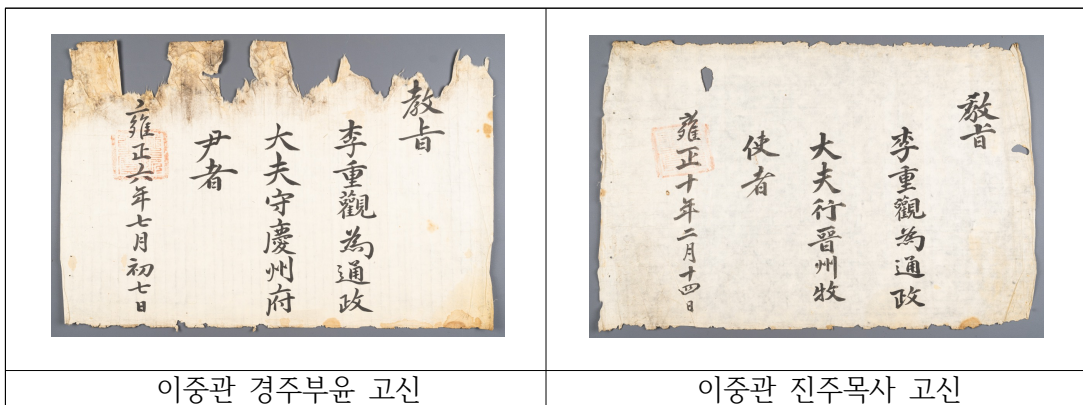
또한 지경연사 김동필(金東弼, 1678~1737)과 대사간 이정제도 이종관의 파직을 거두어 달라고 청했으나, 영조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결국 영조는 이종관을 파직하는 대신 임시직인 군직에 임명하였다.

같은 해 3월, 소론 온건파 주도로 국정이 운영되는 가운데 소론 급진파 이인좌와 일부 남인 과격파가 합세하여 역모를 일으켰다. 이를 ‘무신의 난’이라 한다. 이인좌에 의해 청주성이 함락되고 청주목사가 도망가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부호군 신분이던 이종관에게도 별참군(別參軍)으로 참여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다만 그가 무신난 진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 조정은 소론 온건파 오명항을 중심으로 토벌군을 조직하여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였다.

1731년(영조 7) 3월, 이종관은 병조참지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병조참의로 승진하였다. 이는 그가 안변부사와 경주부윤을 역임하며 쌓은 치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병조참의는 정3품 당상관으로 병조판서 다음가는 자리였으며, 병조의 인사권이 부여되어 도목정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직책이었다.

<그림 7. 영조대 이종관 외관직 임명 자료>



이종관은 병조참지와 병조참의에 임명되기 전인 1730년(영조 6) 먼저 경주부윤에 임명되었다. 경주부윤은 병마절도사를 겸임하는 자리였다. 경주는 신라의 옛 도읍으로, 당시 영남의 주요 관청이 있었고 인구도 많으며 땅도 넓어 다스리기 까다로운 지역이었다. 이종관이 부임했을 때에는 처리해야 할 공문과 소송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하루 일과를 마치면 해가 질 무렵이었다. 그가 처리한 서류만도 수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중관은 안변부사 재임 시와 마찬가지로 경주부의 학풍을 진작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였다. 매월 백일장을 열어 유생들이 시를 짓게 하고,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 다양한 문체로 시험을 치르게 하였으며, 후한 상을 내어 격려하였다. 그 결과 그의 재임 기간에 사마시에 합격한 인원이 5~6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경주부가 안고 있던 폐단을 바로잡고자 개혁을 시도하였다. 첫째, 잡역의 대가를 쌀로 정산하게 하고 이를 각 관청에 저장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초하루마다 순차적으로 집행하게 하였다. 둘째, 민고(民庫)를 설치하여 백성들이 부과되는 잡세를 미리 감당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고마청(雇馬廳)을 설립하여 관청의 영송(迎送) 비용을 감당하게 하였다. 넷째, 경주부 관할 역참에 별도의 인력을 파견하여 식량을 비축하고 물자를 정돈하게 하였다. 이중관은 자여도 찰방을 지낸 경험이 있어 역참의 어려움과 폐단을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신 접대와 물품 준비를 위해 관에서 말 10필을 구입해 부유한 가정에 분산해 맡기고, 그 대가로 잡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교대로 운송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그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경주부의 폐단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역 문제였다. 당시 사찰의 노비에게 까지 군역이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청했다. 둘째, 양전(量田)의 시행이었다. 새로 양전을 실시하여 토지 장부를 정리하고 부세의 균등을 이루도록 요청하였다. 셋째, 효자와 열녀에 대한 포상을 건의하였다.

이처럼 이중관은 경주부의 개혁과 선정을 위해 힘썼으며, 이에 감화된 백성들이 생사당을 세우려 하기도 하였다. 당시 경상도 암행어사 이흠(李滄, 1684~1740)이 해당 고을을 시찰하고 올린 서계에서도 그의 치적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경주부는 폐단과 병폐가 많아 관리들이 감당하기 힘든 곳이었었는데, 이중관의 개혁으로 내부 질서가 바로잡히고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다고 하였다.

이후 이중관은 다시 장례원판결사, 좌부승지, 우승지에 연이어 임명되었고, 1732년(영조 8) 2월에는 진주목사에 임명되었다. 진주목사는 그가 역임한 마지막 관직이었다. 그러나 1733년(영조 9) 5월, 부임지인 진주목에서 업무 과중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활동한 전주이씨 병사공파 이란 종가의 후손 이종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의 생애와 관직 활동을 현전하는 종가 자료와 관찬 사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종관은 전주이씨 효령대군의 12세손으로, 영특하여 일찍부터 이현·조상우·조인수에게 학문을 배웠다. 조모인 대구서씨의 영향으로 서문중·서종태와도 자주 교유하였으며, 특히 어려서부터 서문중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소론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

스승 이현에게서는 오명항·조태억과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 성균관 유생 시절에는 송성명·조경명·조석명과 함께 '청교사갑인회'를 조직하여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다. 1699년 사마시에 합격한 이정제·심상정과도 막역한 사이였다.

그러나 윤증을 비판하고 스승 조상우를 탄핵했던 정호의 공격을 받아 공릉참봉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영광으로 낙향했으나 문중과 장인의 권유로 다시 문과 시험을 준비하였고, 마침내 증광시에서 병과 4등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약 13년간 관직에 몸담았으며, 능력이 출중하고 성품이 강직하여 승진 속도가 남들보다 빨랐다. 주로 언관이나 승지로서 국왕을 보필했으나, 안변부사·경주부윤·진주목사 등 외관직을 맡을 때도 고을을 선명하게 다스려 명성이 높았다.

정치적으로는 소론의 온건파로서 최석항·조태구·조태억 등과 함께 경종을 보호하고 노론을 견제하였으며, 급진 소론과는 달리 왕세제였던 연잉군까지 함께 지키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김일경·유봉휘 등 소론 급진파에게 미움을 받아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한 이후에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더욱 중용되었다.

이종관은 노론과 소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18세기 초에 활약한 인물로, 왕실의 후손이자 경종과 영조를 보필한 충신이었으며, 영조의 스승이기도 하였다. 이번 연구는 이종관이라는 인물을 학계에 알리고 그 정치적·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사춘헌공일기초』
『사춘헌공행적』
『사춘헌공책문사집』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한국학 기초자료해제집 8 -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 엔터, 2024.

이희환, 「영조대 탕평책의 실상」, 전북대사학회, 『전북사학』 16집, 1993, 45~82쪽.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탕평기반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진단학회, 『진단학보』 56집, 1983, 27~66쪽.
최성환, 「경종대 신임옥사와 충·역 의리의 귀결」,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58집, 2021, 95~135쪽.
한지희, 「영조 초 붕당론의 변용과 탕평책의 수립」,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31집, 2016, 425~457쪽.

『自警別曲』의 서지적 분석과 저자 문제

이향배_충남대 한문학과 교수

조광현(한국학중앙연구원 석임연구위원)

『自警別曲』의 서지적 분석과 저자 문제

이향배(충남대 한문학과 교수)

I. 序論

<자경별곡>은 율곡 이이가 저술한 교훈가사로 알려져 왔다. 『자경별곡』을 최초로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한 사람은 鄭益燮이다.¹²³⁾ 정익섭은 가사의 內容, 形式, 歌風 등으로 미루어 율곡 이이가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강전섭은 <자경별곡>의 저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저자가 문석용이라고 주장하였다.¹²⁴⁾ 이후에는 <자경별곡>의 저자문제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대체로 <자경별곡>은 암묵적으로 이이의 저술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율곡전서』에는 <자경별곡>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율곡 학파 학자들의 저술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이이의 한글 작품인 <고산구곡가>의 경우는 이이가 지었다는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으며 우암 송시열은 제자들과 합의하여 <고산구곡가>를 한역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자경별곡> 저술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이가 당시에 이 작품을 정말로 지었다면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이를 증명할만한 근거자료가 여러 사람들의 저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이가 <자경별곡>을 지었다고 확정할 만한 자료를 발굴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자경별곡>의 이본이 몇 종류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본이 어떤 상태이며 어느 것이 정본인지도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자경별곡>이 유일본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여러 종류의 이본이 존재하고 이본마다 내용과 표기가 약간씩 달라져 있다면 어느 것이 정본인지 확인한 다음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경별곡>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자경별곡』은 소장처가 대부분 전라도 지역에 있다. 이이가 생전에 전라도 지역을 간 적이 없는 상황에서 <자경별곡>이 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황상 진위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에는 가사 문학이 유난히 발달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많은 가사 문학 작품이 창작되고 전승되어 왔다. 현재 <자경별곡>이 전국에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담양의 가사문학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5종류가 있고, 규남박물관에 1종류가 있으며, 전주병사공 종가에 1종이 있다. 이 밖에도 <자경별곡>을 소장한 곳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판본은 이 정도이다.

이 <자경별곡>은 모두 필사본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판본마다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 <자경별곡>을 연구하면서 문학적 검토만 이루어지고 서지학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123) 정익섭, 「栗谷先生 「自警別曲」考察抄-作家考를 中心으로」, 『국문학보』2집, 전남대학교, 1960.

124) 강전섭, 「傳栗谷先生作歌辭에 對한 管見」, 『한국언어문학』21, 1982.

않았다. 이 작품이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면 서지학적 검토는 당연히 거쳐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으며 언제 필사했는지 어느 것이 정본에 가까운지 등을 검토할 때 <자경별곡>이 정말로 이이의 작품인지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자경별곡>에 대해 먼저 서지학 측면을 검토하고 이런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저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자경별곡>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고 필사본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저자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자경별곡>의 異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자경별곡>의 이본이 몇 종류인지는 조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국립중앙도서관과 담양의 가사문화관 등 기관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와 그 밖에 해제집 등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자료를 모으면 <자경별곡>은 대략 7종류가 있다. 규남박물관 1본, 가사문학관 5본,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 기초자료해제집에 소개된 1본 등이다. 본고는 먼저 7종의 <자경별곡>을 중심으로 판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사문학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경별곡> 자료를 보면 구정길본¹²⁵⁾은 규격이 23×21.5cm로 표제로 ‘自警別曲’이라 썼으며 겉표지 뒷면에 일본책의 낱장이 배접되어 있었다. 배접된 낱장에는 ‘大正’이란 용어가 나온다. 속표지에는 ‘乙丑三月十二日’과 ‘自警別曲’이 쓰여 있다. ‘을축삼월십이일’은 필사한 해와 날짜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乙丑年은 1985년이나 1925년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필사본의 종이는 한지이며 <자경별곡>의 본문이 상하 두 단으로 제일 앞에 수록되어 있다. 다음에는 ‘五霸’, ‘三剛’, ‘五倫’, ‘四大’, ‘八條’ 등기본 장식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채침의 <書傳序>, <佛說三祥帝王經>, <草惡經>, <西神退送法祝文>, <定時看法>, <埋胎法>, <月建看法> 등의 순으로 실려 있다. 이러한 전혀 상관없는 글이 무작위로 수록된 사실로 볼 때 구정길본은 필사자가 참고하기 위해서 필사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현조본1은 한지에 쓰인 필사본으로 크기가 19×20cm이다. 판심재는 없고 광곽은 한줄로 되어 있다. 겉표지의 표제는 ‘栗谷先生自警別曲 附處士歌’라고 두 줄로 쓰여 있다. 속표지에는 ‘栗谷先生自警別曲’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一百五十一句’라고 썼으며 ‘甲子三月十九日’과 ‘附處士歌’라고 쓰여 있다. 갑자년에 해당하는 해는 1924년, 1864년, 1804년 등인데 어느 해가 맞는지는 불분명하다. <자경별곡>이 앞에서 수록되어 있고 뒤에 ‘處士歌’가 있는데 ‘栗谷先生 漁父辭’라고 주가 붙어 있다. 행간을 구분하는 줄은 없고 2줄 한 쌍으로 구성하여 페이지 당 5쌍으로 상하 2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현조본 2는 필사본으로 종이는 한지이며 크기가 21×22.5cm이다. 표지에는 제목이 ‘栗

125) 필사본의 명칭은 편의상 전소장자의 이름을 붙이기로 한다. 때로는 ‘규남박물관본’을 ‘규’로 표기하는 식으로 앞글자만 따거나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본’을 ‘병사공본’의 식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谷先生自警別曲'이라 쓰여 있고 부제로 '肅宗大王勸學歌'와 '闕里歌'가 쓰여 있다. 속표지에는 표제와 같이 '栗谷先生自警別曲'이라 쓰여 있고 다음과 같은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絳帳今當五五開 강석이 지금 단오절에 열리니
彬彬章甫趁期來 문채나는 선비가 기약한 날 와서
俄從榴影携詩軸 잠시 석류 그늘에서 시축을 잇고
更摘菖花泛酒盃 다시 창포 꽃 따서 술잔에 띄우네
驥步展才應大道 천리마는 재주 퍼려고 큰 길 나서며
鳳飛監德是高台 높은 대 봉황이 날아 덕을 보이는데
團樂此會猶餘興 단란한 이 모임 오히려 흥취 남아서
願抱淸琴後日廻 청금 안고 훗날 돌아오기를 원하네

이 시 옆에는 고갑자로 필사한 해로 보이는 '昭陽作噩麥涼月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昭陽作噩'은癸酉에 해당하고 '麥涼'은 음력 4·5월 정도에 해당한다. 수록된 글을 보면 <자경별곡>, <처사가>, <肅宗大王勸學歌>, <闕里歌> 등이다. 수록된 글로 볼 때 계유는 1800년 1873년이 해당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해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책은 청소년들의 학문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현조본 3은 한지에 쓴 필사본으로 크기는 19.5*20cm이다. 표지에는 제목이 '栗谷先生自警別曲'이라고 쓰여 있고 '戊辰十月旬五日'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속표지에도 같은 제목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날짜 아래 '始'가 붙어 있다. 무진년 10월 5일에 필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무진년은 1928년, 1868년, 1808년 등이 해당하는데 1928년일 가능성이 높다. 실려 있는 글은 제일 앞에 '栗谷先生自警別曲'이라는 제목이 있고 주의 형식으로 "先生姓李諱珥 字叔獻 德水人 栗谷號也"라고 쓰여 있다. <자경별곡> 본문이 상하 이단으로 10줄씩 수록되어 있다. 뒤에는 <處士歌>, <무제가사>가 붙어 있다. 이현조본1을 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옥본은 한지에 상하 이단으로 쓴 필사본으로 크기가 21*16cm이다. 겉표지에는 제목이 '警世歌'로 쓰고 '己巳四月十三日妝裘'라고 필사하고 장채한 날을 기록하였다. 기사년은 1868이나 1929년일 가능성이 높다. 속표지에는 '자경별곡'이라는 제목과 '己巳四月五日'이라고 써 있다. 이어서 <자경별곡>의 본문이 상하 2단으로 실려 있으며 이어서 <勸學歌>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자경별곡> 본문 일부만 필사되어 있어서 완전한 필사본은 아니다.

규남박물관본은 한지에 쓴 필사본으로 크는 18.3*18.3 cm이다. 표지에는 '自警別曲'이라 제목이 흐릿하게 쓰여 있으며 한글로 쓴 '자경별곡'은 필체가 다르므로 후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 작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종이의 상태로 볼 때 현재까지 발견되는 <자경별곡>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조경별곡'이라는 제목을 쓰고 행간을 구분하지 않고 한 줄로 이어서 썼으며 구와 구 사이는 처음에는 '○'로 표시하다가 중간 이후에는 점을 찍어 구분하였다. 수록된 글은 <조경별곡>, <불효탄이라>, <금보사라>, <늦척이라>, <증여의비출가라>, <인연신슈랄다강보논이라> 등이 있고 마지막에는 '세지정묘초삼일

서'라는 필사한 날이 기록되어 있다. 정묘년은 1927년, 1867, 1807년 등이 해당하는 연도이지만 어느 해인지는 불분명하다.

병사공종가본은 한지에 쓴 필사본으로 크기는 19.5×17.9cm이다. 표지의 제목은 '自警別曲'이라 쓰여 있고 '栗谷先生所著'라고 작자를 밝혀놓았다. 속표지에는 제목이 동일하게 쓰여 있으며 '敬齋丈所有'라고 써서 소유자를 밝혀놓았다. 16줄 상하 2단으로 정서되어 있는데 본문의 첫장은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자경별곡> 본문, <勸學歌>, 퇴계선생의 <大成殿歌> 등의 순으로 실려 있고 마지막 표지에는 '碧松居士借書'라고 쓰여 있다. 경재와 벽송거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발견된 <자경별곡>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현조본1·2·3은 모두 필사본이다. 필사 시기는 연도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일제강점기 전후에 필사한 것으로 보이며 규남박물관본은 구한말 정도에 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세상에 드러난 <자경별곡>의 이본 중에 어느 것이 최고본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사항도 검토할 때 논의가 가능하므로 뒤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규남박물관본



병사공종가본



구정길본



이현조본1



이현조본2



이현조본 3



김경옥본

Ⅲ. 표기와 분절

<자경별곡>은 크게 순수한글본과 국한문혼용본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규남박물관본은 순수 한글본이며 나머지는 국한문혼용본이다. 이이의 <고산구곡가>는 국한문혼용으로 쓰여 있으며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의 판본을 보면 국한문혼용으로 표기했지만 한자어의 경우

한글로 음을 달아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한문혼용이라 하더라도 한자음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비해 <자경별곡>은 순수 한글본과 국한문 혼용본 두 종류가 있다. 순수 한글본은 한자를 모르는 대상 즉 여성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읽히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의 <자경별곡>이 순수 한글로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국한문 혼용으로 쓰여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현재까지 발견된 7종의 <자경별곡> 중 최초의 원전이라고 판별한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먼저 7종의 표기 상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7종의 <자경별곡>의 원문은 대동소이한 면이 있다. 일단 원문에서 차이나는 것을 보면 병사공 종가본은 한 장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첫 구절부터 ‘痛憤하다 痛憤하다’부터 14구 ‘싱각하면 切通하다’까지 빠져 있다. 김경옥본은 전문이 없고 7곡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7곡까지 본문을 보면 빠져 있는 부분이 규남본과 동일하다. 예를 들면, ‘豪俠放蕩 亂雜하다 父母胎憂 무삼닐고, 切痛하다 切痛하다 싱각하면 切通하다’는 대목과 ‘四都八路 널운들의 山明水麗 萬世碁라 家給人足 太平界의 國泰民安 조홀시고’는 대목 등이다. 이후의 규남본 본문은 ‘食無求飽 銘心하시 飲食之人 賤하다’와 ‘恩惠를 갑츠하니 昊天이 極이업니 사람마닥 子女慈愛 父母恩情 그러하니 身體髮膚 씨친몸을 履薄臨深 戰兢하다 出入場과 言語上니 操心하면 孝子로다 손한번 놀닐제와 발한번 거러갈제 한찌라도 닛지말면 子息道理 常綱이라 百行萬善 本源工夫 孝之一字 그썩이라 臣下되여 不忠하면 殉節死義 속절업다 戰陳無勇 한난거시 孝誠업슨 타시로다 夫婦間의 無別하면 家道敗亡 잠산이라’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 김경옥본과 규남본의 표기를 비교하면 김경옥본은 한글표기에서 아래하·’의 사용이 현저하게 적고 규남본은 이 표기가 상대적으로 많다. 예를 들면 ‘離婁갓치 발근눈에 [김]’, ‘니루갓치 발근눈이[규]’, ‘사람마다 이한몸이[김]’, ‘샤름마다 이훈몸이[규]’ 등과 같다. 이는 필사자가 같은 판본을 필사하면서 김경옥본은 당시의 한글표기로 무의식적으로 변용할 수가 있고 규남본은 애초에 한글본이거나 국한문혼용을 한글로 필사한 것일 수 있다. 이 두 판본 중에는 규남본이 시대가 앞선 필사본이라 할 수 있다.

이현조본1, 이현조본 2, 이현조본 3은 빠져 있는 부분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현조본 2와 3에서는 ‘姜公兄弟 有名하다 同傘同撿 보기조코’와 ‘盜跖이도 富饒하면 一妻一妾 豪彊하고’라는 대목이 동일하게 빠져 있다. 또한 ‘친히홀디 소히하면 스유종시 못될세라 후손 강풍 화동하면 선조흔령 희환하니’와 ‘종즈종손 증흔즈손 부디부디 후대호쇼 슈양장공 구세 동거 몇빅인이 동석하며’와 ‘히미티 드난독과 스름마다 다잇난가 그독과 듨도든다 放心하면 忘身일시’는 대목은 세 판본이 동일하게 빠져 있다. 이로 보면 이현조본1·2·3이 동일한 계통의 필사본이다. 한글 표기로 보면 ‘荊果不食 ㅎ난집의 酒肉이 狼籍하니[이2]’ ‘果菜不食 ㅎ난답의 酒肉이 狼藉하니[이3]’, ‘이러한 이世上의 捧人을 하자하면[이2]’ ‘일어흔 이世上의 擇人을 ㅎ자하면[이3]’와 같이 이현조본2는 현대화된 표기가 많은데 비해 이현조본 3은 고어의 표기가 많다. 집의 표기도 이현조본 3은 구개음화 일어나기 전의 표기를 하고 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이현조본3이 이현조본 2보다 필사한 시기가 앞선다. 이현조본 3보다는 이현조본 1이 시기가 앞선 것으로 판별된다.

구정길본은 국한문혼용본이지만 규남본의 한글본에서 이현조본1·2·3의 국한문 혼용본으

로 이행하는 중간지점을 보여준다.

구정길본	이현조본1	김경옥본	병사공종가본	규남본
假令닐너 금수되면 못될것도 무슈흐다	假令닐러 禽獸되며 못될것도 無數흐다	가령일너 禽獸되면 못될것도 無數흐다	假令일너 禽獸되면 못될거도 無數흐다	가령일너 금수되면 못될것도 무슈흐다
어룬말습 슈죽 할제	얼운말습 酬酌 할제	어은말삼 수작 할제	어룬말습 슈죽 할제	어룬말습 슈죽 할제
꽃촛난 저나부 야 거무줄이 화 망이라	꽃촛난 저나부 야 거무실이 禍 網이라		꽃촛난 저나부 야 거무줄이 그 물이내	꽃촛난 저나부 야 거무시리 양 감이라

<자경별곡>의 국한문혼용본이 대동소이하지만 구정길본이 이현조본이나 병사공종가본 보다 한자 표기가 약간 적음을 알 수 있다. 규남본은 순수 한글로 표기되었고 이것이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가 전환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표기를 구정길본이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7종의 <자경별곡> 이본을 보면 판본마다 분절이 다르다. 7종의 분절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판본내용	구정길본	이현조본1	이현조본2	이현조본3	김경옥	규남본	병사공
學文		서곡	서곡	서곡	서곡	서곡	서곡
奉親		第一曲	一曲	一曲	一曲	일곡	一曲
君臣有義		第二曲	二曲	二曲	二曲	이곡	二曲
兄弟友愛		第三曲	三曲	三曲	三曲	삼곡	三曲
남녀유별		第四曲	四曲	四曲	四曲	사곡	四曲
장유유서		第五曲	五曲	五曲	五曲	오곡	五曲
尊師		第六曲	六曲	六曲	六曲	육곡	六曲
交友		第七曲	七曲	七曲	七曲	칠곡	七曲
睦族		第八曲	八曲	八曲		팔곡	八曲
喪禮		第九曲	九曲	九曲		구곡	九曲
대소상제		第十曲	十曲	十曲			
婚禮		第十一曲	十一曲	十一曲		십곡	十曲
결혼		第十二曲					
接賓客		第十三曲	十二曲	十二曲		십일곡	十一
交隣		第十四曲	十三曲	十三曲		십이곡	十二
이웃화목		第一節					
입조심		第二節	第十四曲	第十四曲		십삼곡	十三
총론		第三節	第一節	第一節			總論
奎欲		第四節	第二節	第二節			
		二中	二中	二中			
공부론		第五節	第三節	第三節			
	분 절 표 기없음	문장 밖 분절표기	문장안 분 절표기	문장 밖 분절 표기	문장 밖 분절 표	문장 밖 분절 표	문장 밖 분절 표

					기	기	기
--	--	--	--	--	---	---	---

판본마다 분절이 다르게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정길본은 가사의 분절 표기가 안되어 있다. 이현조본 1과 3, 규남본, 김경옥본, 병사공본은 문절표기가 본문 밖에 되어 있다. 오직 이현조 2만 본문 안에 분절 표기가 되어 있다. 이로 보면 <자경별곡>은 당초에 본문이 분절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후인들 중 누군가에 의해 가사를 이해하기 쉽도록 본문을 내용별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최종에는 아예 가사의 본문을 분절하여 제목인 것처럼 표기했다. <자경별곡>이 전사되는 과정에서 필사자가 보기에 편리하도록 분절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분절한 것이 필사본마다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분절한 것을 비교해보면 9곡까지는 같지만 10곡부터는 필사본마다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이현조본1은 서곡과 14곡 5절로 나누었고 이현조본2·3은 서곡과 14곡 3절로 나누었다. 병사공본은 서곡과 13곡 총론으로 나누었고 규남본은 서곡과 13곡으로 나누었다.

분절에서 나는 가장 큰 차이는 <자경별곡>의 별곡 구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자경별곡>의 본문 안에는 몇 곡으로 구성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구정길본, 규남본과 병사공본은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열세별곡 그만두고 모도일너 의논하시’라는 대목이 있다. 그러나 이현조본 1·2·3은 ‘널네別曲 그만두고 모도닐너 議論하시’로 되어 있다. <자경별곡>에서 밝히고 있는 별곡의 수가 두 종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별곡과 14별곡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일단 이현조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사본이 모두 13별곡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자경별곡>은 14별곡보다는 13별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현조본 1·2·3에서 ‘널네別曲’이라고 밝힌 것은 단순히 전사자의 오류이던지 아니면 전사자가 14별곡으로 분절하면서 ‘널네별곡’으로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로 인해 <자경별곡>의 총론 부분에 밝힌 별곡의 수가 달라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현조본 1·2·3이 14별곡으로 나눈 것은 동일하더라도 별곡을 나눈 단락이 다르고 절을 나눈 구절도 차이가 난다. 이현조본2와 3은 별곡을 나눈 부분이 같지만 이현조본1과는 차이가 난다. 이현조본1은 혼례를 말한 제11곡을 두개의 별곡으로 나누었고 마지막 부분을 5개의 절로 나누었다. 이에 비해 이현조본 2·3은 14곡 3절로 나누어서 총론 부분만 3절로 나눈 것이다. 이현조본1은 다른 필사본에 비해 좀더 세분하여 별곡을 나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경별곡>의 분절이 필사본마다 달라진 이유는 후인들이 필사할 때 임의대로 나누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구정길본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저자가 <자경별곡>을 창작할 때 편장을 구분해 놓지 않았다. 다만 각 <자경별곡>의 총론부분에서 열 세곡으로 구성된 사실을 밝혀놓았기 때문에 규남본과 병사공본은 13곡으로 나눈 것이다. 그렇다면 <자경별곡>은 서곡, 13개의 별곡, 총론 부분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IV. <자경별곡> 내용 검토

<자경별곡>이 율곡 이이의 저작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는 별곡 내용이 이이의 저술과 유사성을 들고 있다. 정익섭은 가사가 내용의 변이에 따라 曲과 節로 분단된 것을 특이점으로 들고 一曲 奉親, 二曲 君臣, 三曲 兄弟, 四曲 男女, 五曲 敬老, 六曲 師事, 七曲 交友, 八曲 睦族, 九曲 喪葬, 十曲 祭祀, 十一曲 婚禮, 十二曲 婚嫁儀式, 十三曲 接賓, 十四曲 交人, 一節 寓接, 二節 慎口, 三節 居家, 四節 窒慾, 五節 讀書 등으로 나뉜다고 하고 향약의 <德業相勸>, 『擊蒙要訣』의 <學習指導要目>, 學規의 <模範事目> 등과 서로 통한다고 하였다.¹²⁶⁾

성낙희는 <자경별곡>의 내용을 『격몽요결』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향약의 <德業相勸>, <學校模範>, 『擊蒙要訣』 등이 <자경별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자경별곡>과 『격몽요결』의 편장 체제가 상통하고 구체적 기술 방식도 상호 긴밀히 유기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중 자경별곡의 5절에 熟讀詳味해야 할 것으로 열거한 『小學』, 『大學』과 『或問』, 『論語』, 『孟子』, 『中庸』, 『詩經』, 『禮經』, 『尙書』, 『周易』, 『春秋』와 배열 차례까지 『격몽요결』의 독서 목록과 일치함을 들었다.¹²⁷⁾ 뿐만 아니라 송대 성리서 및 史書의 목록도 비슷하며 老莊 등 이단을 배척한 것도 비슷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자경별곡>이 이이의 저술을 바탕으로 한 것은 틀림없다. <자경별곡>의 내용목차와 이이의 저술 목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경별곡	격몽요결	학교모범	鄉約
學文, 奉親, 君臣有義, 兄弟友愛, 남녀유별, 장유유서, 尊師, 交友, 睦族, 喪禮, 婚禮, 接賓客, 交隣, 입조심, 窒慾, 공부론(독서)	立志, 革舊習, 持身, 讀書, 事親, 喪制, 祭禮, 居家, 接人, 處世	立志, 檢身, 讀書, 慎言, 存心, 事親, 師事, 擇友, 居家, 接人, 應舉, 守義, 尙忠, 篤敬, 居學, 讀法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목차로만 보아도 <자경별곡>은 『격몽요결』, <학교모범>, <향약> 등의 목차와 유사하며 실제 내용도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

그러나 『격몽요결』, <학교모범>, <향약> 등은 인재를 교육하거나 향촌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내용도 인재로 성장하거나 향촌 교화에 필요한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경별곡>에서 自警이란 말은 자신을 경계하는 의미를 가진다. <자경별곡>은 자신을 경계하는 내용보다는 일반 서민이나 자제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서 자경이라는 제목과 본문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명실이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람되어 胎生 하니 못날디도 ㅎ고만타

126) 주1) 참조.

127) 성낙희, 「自警別曲의 내용 분석 - 擊蒙要訣과 비교하여 -」, 『국어교육』1, 1997.

北胡地の 生長하면 凶奴을 못免하여
 西藩国の 生長하면 犬戎이 아조쉽고
 南蠻国の 生長하면 鳩舌荒服 될번하다
 조흘시고 우리東國 文明하다 우리東國
 堯之日月 舜之乾坤의 檀君古國 箕子州라

이 내용은 문명국인 동국에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대목이다. 사람이 태어난 곳에 따라 환경의 지배를 받아 오랑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흉노족, 서번, 남만 등 변방의 이민족을 비하하면서 조선을 문명국으로 자부심을 갖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이가 <격몽요결서>에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일상의 모든 일에 각각 마땅한 것을 취할 뿐임을 강조한 것과는 품격의 차이가 있다.

또한 다음 인용문은 마음을 집에 비유하여 설명한 대목이다.

집主人을 찾조 하니 泰然天君 아니신가
 上樑文의 하신말삼 보기쉽고 알기쉽다
 拋樑東 萬萬歲의 博愛之謂仁이로다
 仁字뜻을 살펴보니 四時中의 봄이로다
 拋樑西 万万歲의 行而宜之之 謂義로다
 義字뜻을 살펴보니 四端中의 羞惡로다
 拋樑南 万万歲의 揖讓進退 禮로다
 禮字뜻을 살펴보니 四時中의 여름이로다
 拋樑北 万万歲의 聰明叡智 智로다
 智字뜻을 살펴보니 四端中의 是非로다
 拋樑中 万万歲의 誠實無僞 信니로다
 信字뜻을 살펴보니 五行의 土로다

이 대목을 보면 마음은 집에 비유하고 주인은 천군으로 비유하였다. ‘拋樑’은 상량문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상량문은 돌보를 올릴 때 동서남북 사방과 상하에 들어서 기원하는데 이때 기원하는 말을 7언절구 형식으로 6편을 쓴다. 각 절구 형식의 첫 구절은 ‘兪郎偉拋樑東’의 식으로 쓴다. 작자는 마음을 집에 비유하였으므로 상량문의 7언 절구로 쓰는 기원문의 형식을 빌어 마음의 본성인 인의예지신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인의예지신에 대해 저자는 주자의 관점에 아닌 한유의 설을 사용하였고 四端, 四時, 五行에 대비하여 互文式으로 노래하였다. 문제는 인을 博愛로 풀이하는 대목이 한유가 <原道>에서 한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博愛之謂仁’은 성리학자라면 인의 정의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한유의 이 대목을 인용하여 인을 정의한 사실은 저자가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나라 유학자들이 한유의 이 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또한 ‘拋樑’를 통해 마음 본성을 설명한 것은 그럴듯한 발상이지만 성리학과 문학에 능통한 도학자 이이가 이런 장치를 활용하여 심의 본성을 설명할 리가 없으며 더구나 한유의 이구절을 인용하여 인을 설명할 까닭이 없다. 이처럼 과연 이이가 이런 구절을 지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들게 한다. 이는 이이의 <자경별곡>의 저자가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율곡전서』에 <자경별곡>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自警文>이 있다. 이 글에는 15개의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주제	내용
1	立志	聖人으로 표준 삼을 것
2	定心	말을 적게 함으로 시작
3	말	때에 맞게 말을 하고 간략하게 할 것
4	定心	정신을 수렴
5	慎獨	戒懼謹獨을 항상 염두에 둠
6	慎獨	모든 악이 신독하지 못한데에서 생김
7	慎獨	신독해야 浴沂詠歸 의미를 알 수 있음
8	일과계획	새벽에 하루 일과 생각, 독서
9	利心省察	財利榮利를 염두에 두지 말것
10	處事	해야 할 일은 정성을 다할 것
11	仁義	불의 불인한 일로 천하 얻더라도 안하겠다고 다짐할 것
12	橫逆	반성하고 感化로 기약
13	家和	가족이 교화되지 않는 것은 성의가 부족함
14	戒居	눕거나 기우려 서지 말고 항상 정신을 맑게 할 것
15	用功	느긋하지도 급하게 하지 말것

이 <자경문>은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마음을 수양하며 사물을 처리하는 자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경문>은 성인을 표준으로 삼고 언행을 경계하고, 정신을 수련하며, 신독을 강조하며, 제가와 치국을 하는데 먼저 자신을 반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이의 <자경문> 내용은 <자경별곡>의 내용구성과 차별성이 있다. 이이의 <자경문>은 성인을 표준으로 삼아 수기치인의 도를 실천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자경별곡>은 인간으로서 윤리를 실천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교훈적인 내용에 초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自警’이라는 제목아래 주로 자신의 언행을 경계하고 학문을 추구하는 내용이 많지만 교훈적인 내용으로 저술한 작품은 거의 없다. 이이의 <자경문>에 견주어 볼 때 <자경별곡>은 본문 내용과 제목이 서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이가 <자경별곡>을 지었다면 교훈적인 가사 내용보다 자신 언행을 경계하고 수기치인의 도를 수양하는 측면이 강조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V. 作者問題

정익섭은 <자경별곡>이 율곡 이이가 지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첫째 이이가 鄉民을 대하는 정신과 생활여건이 이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둘째 가사의 내용이 이이의 향약 정신과 『擊蒙要訣』 및 學規와 통하고 個條別 있어서 서로 통하는 점, 셋째로 형식이 고산구곡가의 「곡」 별과 통하고 표기 형식이 연대적으로 어울리는 점, 넷째 歌風이 선생의 인격과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¹²⁸⁾ 그러나 정익섭이 <자경별곡>이 이이의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근거로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

강전섭은 鄭在燁의 <自警別曲序>에 근거하여 月溪 文錫容(1854-1905)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재혁은 노사 기정진의 제자 鄭琦의 초명이다. 그의 문집 『栗溪先生文集』 13권에는 <자경별곡서>가 수록되어 있다. 정기는 <자경별곡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자경별곡>은 월계 문공의 저술이다. 모두 12편인데 각 편마다 수 십 마디 말이 있으니 말이 모두 절실하고 매우 정성스럽다. 옛것을 연구하여 도를 밝혀서 몸을 이끌어 옛 도에 두고 지금 무너지고 흩어진 풍속을 풍자하고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현인군자가 시대를 걱정하고 풍속을 우려하여 지은 것으로 말만 잘하는 선비가 미칠 바가 아니라는 것이 거의 가깝다.……지금 이 자경별곡 12결은 말이 간절하면서 씩씩하고 뜻이 관대하면서 엄정하며 절조가 질박하면서 속되지 않다. 말한 것은 곧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 충성하며 형제에 우애하고 부부유별에서부터 장유유서 봉우유신 睦族, 喪制, 接人의 관후함, 鄉約에 이르렀는데 學文을 제일 앞에 두어 성현의 법도를 살피고 사리의 당연함을 알게 하여 반드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대개 문사가 선을 감발하고 악을 징계할 만하다. 또 비슷한 종류를 인용하고 대구로 나열하여 방언을 섞었으니 마을의 아이들도 한번 들으면 환히 알 수 있다.¹²⁹⁾

이 기록을 언뜻 보면 문석용의 <자경별곡>과 이이의 저작으로 알려진 <자경별곡>이 동일한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學文, 부자유친, 군신유의, 우형제,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 돈족, 상제 접인, 향약 등의 조목이 있어서 두 작품이 서로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이이의 저작으로 알려진 <자경별곡>은 서곡, 13장의 별곡, 총론 등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석용의 <자경별곡>은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작품의 편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별개의 작품임을 말해준다.

또한 정기의 서문을 잘 살펴보면 문석용의 <자경별곡>은 한문과 한글의 혼용으로 지어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의 전체가 국한문 혼용 또는 순수 한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한시와 한글이 혼용되어 창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 작품은 이전의 작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自庵 金綵의 <花田別曲>¹³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28) 정익섭, 「율곡선생 「自警別曲」 考察抄-作家考를 中心으로」, 『국문학보』 2집, 전남대학교, 1960. p.123.

129) 鄭琦의 『栗溪先生文集』 13권 <自警別曲序>. 自警別曲者. 月溪文公所著也. 凡十有二篇. 篇各數十言. 其言皆切實懇至. 究古明道. 欲援身以措之古道. 而于欲勸刺齊整凡今之類冗散駁者. 所謂賢人君子閱時病俗之所爲. 而非能言之士所能及者. 殆庶幾焉. ……今此自警曲十二闕. 其語懇而莊. 其義寬而嚴. 其操樸而不俚. 其所言者. 乃孝親忠君. 友兄弟別夫婦. 長幼序朋友信. 睦於親喪有制. 以至婚姻以禮. 接人寬厚. 鄉里有約. 而先之以學文. 使之考夫聖賢成法. 識夫事理當然. 必欲去其惡而行其善焉. 蓋其爲言. 已足感發懲創. 而又復引類排比. 雜之邦諺. 街童巷釋. 亦可使之一聞瞭然也.

130) 金綵, 『自菴金先生文集』 卷2, <花田別曲>. 天之涯地之頭. 一點仙島. 左望雲右錦山. 巴川 봉내 高川. 고내 山川奇秀. 鍾生豪俊. 人物繁盛. 偉 天南勝地景괴엇더 허닝잇고. 風流酒色. 一時人傑. 再唱

서문의 내용으로 볼 때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은 이미 있었던 창작 행위인데 문석용의 <자경별곡>도 이러한 방식을 준용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이이의 저술로 알려진 <자경별곡>이 문석용의 <자경별곡>이라는 강전섭의 주장은 타당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정기의 <자경별곡서>에 근거하면 편장 체제가 다르고 표기 방식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석용의 <자경별곡>과 이이 저술로 알려진 <자경별곡>은 별개의 작품이다.

또한 조동일은 이이가 지었다는 <樂貧歌>, <樂志歌>에 대해 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투적인 표현을 갖추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하고 <自警別曲>에 대해서는 장편가사라는 점이 특이하고 각 항목마다 하나씩 덕목을 내세워 열심히 실행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심성이 물욕으로 변한다고 개탄하고 전곡에 눈이 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한 말은 극단적으로 이월론이어서 이이의 사상인지 의심했으며 ‘요지이월 순지건곤’으로 유학을 표방했지만 단군조선과 문명국을 내세운 사실을 들어 청나라 이후에 국내질서가 위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도학가사를 열심히 퍼뜨리자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³¹⁾ 이런 평가를 볼 때 조동일도 <자경별곡>이 병자호란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고 이이의 작품이 아니라고 설파한 것이다.

이처럼 <자경별곡>은 이이가 저술한 작품이 아니라고 학계에서 암암리에 논의되었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가 없었고 이본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경별곡>이 이이의 저술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 선행의 논의를 참고하고 <자경별곡>의 저술시기와 판본의 서지학적 검토를 통해 이제는 <자경별곡>의 작자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전하는 <자경별곡> 7종의 판본을 보면 대부분 조선후기 또는 일제 강점기에 필사한 것이다. 필사본을 보면 순수 한글본인 규남박물관본에는 표제에 ‘자경별곡’이라고만 쓰여 있고 저자가 누구인지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국한문혼용본의 경우도 구정길본과 김경옥본은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현조본 1·2·3과 병사공종가본은 저자가 율곡 이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면 <자경별곡>은 본래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후인들이 <자경별곡>의 내용이 이이의 저술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는 사실을 보고 율곡 이이의 저술로 추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점차 확산되어 표제에 ‘栗谷先生 自警別曲’ 또는 ‘栗谷先生 所著’ 등의 식으로 쓴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자경별곡>의 내용을 보면 또한 창작 시기가 병자호란 이후로 추정된다. 가사의 내용도 도학자 이이의 사상에 맞지 않는 구절이 들어 있었으며 성리학적 이해가 부족한 서술이 있었다. 또한 이이의 <자경문>과 내용적 특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자경별곡>은 교훈가 사로서 자경이라는 제목과 본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이는 문장을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쓰는 도학자이다. 논리적으로 명쾌한 문장을 쓰는 이이가 제목과 내용이 상치되는 글을 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누군가 이이의 이름을 빌려서 가사를 창작했든지 아니면 교육적 목적으로 『율곡집』을 참고하여 가사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偉 날조차몇분이신고。 河別侍。 芷芝帶。 齒爵兼尊。 朴教授。 손저이。 醉中써랏。 姜綸雜談。 方勳鼯睡。
鄭機飲食。 偉 品官齊會景괴엇더ㅎ닝잇고。 河世涓氏발버훈風月。 再唱偉 唱和景괴엇더ㅎ닝잇고。 [後略]

13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PP.344-346 참조.

<자경별곡>은 조선후기 가사문학에 능한 선비가 이이의 저술을 참고하여 교훈적으로 저술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검토한 사실에 근거하여 현전하는 <자경별곡>은 율곡 이이의 저술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경별곡>이 율곡 이이의 저술이라는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싶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현재 세상에 드러난 필사본으로 볼 때 <자경별곡>은 이이의 저술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VI. 結論

이상의 <자경별곡>에 이본에 대해 검토하고 저자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경별곡>은 현재 <자경별곡>은 7종의 이본이 전한다. 규남박물관본 1종, 가사문학관본 5종(구정길본, 이현조본 1·2·3, 김경옥본),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본 1종이다. 모두 필사본이며, 이본마다 크기·표제·수록 내용이 다르고 일부는 <처사가>, <勸學歌>, <大成殿歌> 등이 함께 실려 있다. 필사 시기는 기록과 형태로 보아 대부분 일제강점기 전후이며, 규남박물관본은 구한말에 제작된 가장 오래된 자료로 추정된다. 향후 이본 간 차이 검토와 최고본 판정 연구가 필요하다.

<자경별곡>은 크게 순수 한글본과 국한문혼용본으로 구분된다. 규남박물관본이 유일한 순수 한글본이며, 나머지는 국한문혼용본이다. 구정길본은 한자 표기가 적어 규남본과 이현조본 사이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며, 이현조본 1·2·3은 동일 계통의 필사본으로 누락 부분과 분절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경옥본은 일부만 전하고, 병사공본은 규남본과 마찬가지로 13별곡 구성을 유지한다. 반면 이현조본들은 14별곡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전사자의 오류나 임의 분절 때문으로 추정된다. 필사 과정에서 분절 표기는 제각각이지만 원래 저작 시에는 분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후대 필사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눈 결과이다. 따라서 <자경별곡>은 본래 서곡·13별곡·총론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경별곡>을 이이의 저작으로 보는 근거는 내용과 체제가 <격몽요결>, <학교모범>, 향약의 <덕업상권> 등과 밀접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실제 독서 목록과 배열, 이단 배척 태도 등이 일치한다. 그러나 작품에는 오랑캐 비하와 같은 서민 교육적 요소, 마음을 집과 상량문 형식에 빗대 한유의 구절을 차용하는 등 성리학자 이이의 저술로 보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 또한 <율곡전서>에는 <자경별곡>이 없고, 대신 자기 언행과 심성을 경계하는 <자경문>이 수록되어 있다. <자경문>은 수기치인에 초점을 둔 반면, <자경별곡>은 윤리적 교훈과 인격 완성에 치중해 제목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저자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이이의 직접 저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익섭은 <자경별곡>이 율곡 이이의 작품이라 주장하며 향민 교화 필요, 향약 및 <격몽요결>과의 내용적 일치, 고산구곡가와 형식 유사, 가풍의 품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논리적 타당성은 부족하다. 강전섭은 정재혁의 <자경별곡서>를 토대로 월계 문석용의 작품이라 주장했으나, 문석용의 <자경별곡>은 12편 구성에 한문·한글 혼용 형태로, 이이의 13별

곡 체제와 달라 별개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 조동일은 작품의 사상적 이원론, 단군·문명국 언급 등을 근거로 병자호란 이후 창작된 가사라 보고 이이의 저작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필사본을 검토한 결과 초기의 필사본에는 저자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후대에 내용적 유사성 때문에 이이의 저술로 추단되어 ‘율곡선생 자경별곡’이라 표기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자경별곡>의 저자 문제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지만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자경별곡>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와 내용적 분석을 통해 이이의 저술이 아니라고 논증했다.

MEMO.

MEMO.

MEMO.

